

해외 보험동향

| 총괄

한상용 (연구위원)

| 해외 보험동향

일본

이상우 (수석연구원)

중국, 홍콩, 대만

이소양 (연구원)

동남아, 중남미

장윤미 (연구원)

북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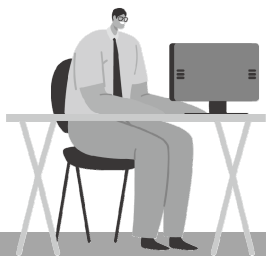
손지영 (연구원)

영국, 유럽

이연지 (연구원)

독일

이승주 (연구원)



07_호

[2021 가을호]

목 차

I. 해외 보험산업 제도 현황

1. 미국 구조 계획법(ARP Act)의 주요 내용과 보험산업에의 영향	1
2. 호주 부가보험 판매 유예제도 시행	4
3. 독일 풍수해보험 의무화 제도에 대한 찬반 논의	6
4. 유럽보험감독청(EIOPA)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원칙 보고서 발간	9
5. 영국과 프랑스의 지급여력제도 솔벤시 II 개정논의	11
6. 중국 감독당국의 온라인보험 시장질서 교란행위 단속 시행	15
7. 일본 건강경영 인센티브 정책과 보험산업 활용	18

II. 해외 보험산업 시장 현황

1. 미국 아마존의 제조물 결함에 대한 보증 확대와 자체 보험 네트워크 도입	22
2. 호주 보험회사(NIB)의 약제비 결제에 대한 보험금 청구 자동화 서비스 출시	24
3. 프랑스 생명보험시장의 회복과 변액보험 및 퇴직연금 수요의 증가	26
4. 중국에서 사업 확장을 위한 AIA생명의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 지분 인수	29
5. 최근 일본에서 개발한 주요 보험상품 현황	31

[특집] 해외 보험산업의 고령화 대응: 중국편	35
---------------------------	----

I

해외 보험산업 제도 현황

1. 미국 구조 계획법(ARP Act)의 주요 내용과 보험산업에의 영향

○ 2021년 3월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구제 입법안인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RP Act)이 발효되었음¹⁾

- ARP Act는 2020년 4월 시행된 코로나19 보조, 구호 및 경제보장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의 후속 법안으로 투입 예산 1조 9,000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사회안전망 강화, 빈곤 방지를 위한 재정지출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ARP Act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과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법안 예산의 20%인 3,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기금(Coronavirus State and Local Fiscal Recovery Funds)의 조성과 근로가구에 대한 1인당 \$1,400의 현금 지원 정책 등을 들 수 있음

- 동 기금(Coronavirus State and Local Fiscal Recovery Funds)은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주정부, 도시, 타운, 빌리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미 재무부에서 직접 배분하는 자금으로, 자금 사용에 최소한의 제한만을 두고 있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현금 지원 정책은 CARES Act의 1인당 지급액(\$1,200)에서 \$200 인상한 \$1,400로 책정되며, 1인당 지급액 자체는 늘어난 반면, 완전 수혜 기준(현금 지원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조건)이 CARES Act의 연소득 기준(1인 가구 \$99,000, 부부 \$200,000 이하)보다 축소(1인 가구 \$75,000, 부부 \$150,000)되어 선별성이 강화된 모습임²⁾

1) 미국 재무부(<https://home.treasury.gov/>)

2) 김태근(2020), 「바이든 행정부 코로나19 대응 정책(American Rescue Plan Act)의 성립 과정과 배경」, 『국제사회보장리뷰』, Vol 16, pp. 57-66

〈표 1〉 미국 구조 계획법(ARP Act)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할당 금액
현금 지원	연소득 기준이 1인 가구 7만 5,000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	4,000억 달러
주정부·지방정부 지원	주정부·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자금 지원으로 광대역 기반 시설, 상수도, 하수도 등에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시	3,600억 달러
세액 공제	- 자녀 세액 공제: 6~17세 아동에 대해 3,000달러,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3,600달러를 공제함 - 근로소득세 공제: 적격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자녀가 없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근로소득세 공제 자격을 확대함 - 아동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	-
급여 보호 프로그램 확장	소규모 기업 대상으로 하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의 대출 자격에 비영리조직 및 인터넷 출판 조직을 포함하도록 확대함	150억 달러
개학 및 고등교육 지원	환기 시스템 업그레이드, 학급 규모 축소, 개인 보호장비 투자를 통해 안전한 개학을 지원하고, 400억 달러의 교부금을 고등 교육에 제공하며 해당 자금을 받는 기관이 학생을 위해 교부금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도록 요구함	400억 달러

자료: 미국 백악관(<http://www.whitehouse.gov>)

○ ARP Act는 현금 지원,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지원 외에도 실업보험 및 건강보험 관련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보험산업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ARP Act는 CARES Act에서 제정된 3가지 실업보험 정책인 팬데믹 긴급실업보상(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PEUC), 팬데믹 실업 지원(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 연방 팬데믹 실업 보상(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FPUC)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기간을 2021년 9월 6일까지 연장하였음³⁾

- PEUC는 기존의 실업수당을 모두 수령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실업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CARES Act에서 최대 13주의 지원기간을 최대 24주까지 연장함
- PUA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으나 기존의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임시 실업 지원 정책으로, ARP Act는 기존 CARES Act에서 규정한 최대 39주의 실업수당 기간을 최대 50주로 연장함
- FPUC는 주에서 제공하는 실업보험의 보충으로 주당 \$600을 제공하였으나, 통합지출승인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에 따라 지원 금액이 \$300로 축소되었으며, ARP Act는 축소된 지원을 2021년 9월 6일까지 연장함

3) The National Law Review(2021. 3. 18),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Employment Law Update"

- 추가적으로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에 따라 제정된 혼합 소득자 실업 보상(Mixed Earner Unemployment Compensation; MEUC)은 프리랜서 및 깃(Gig) 근로자, 자영업자 중 PUA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를 지원함
- ARP Act는 건강보험 정책인 ACA(Affordable Care Act)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시장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모든 소득 수준의 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험 수혜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함⁴⁾
- ARP Act는 소득 수준이 FPL(Federal Poverty Level)의 150%(개인 \$19,140, 4인 가족 \$39,300) 이하인 경우 벤치마크 플랜⁵⁾을 무료로 제공하고, 소득 수준이 FPL의 150~200%에 해당하는 경우 실버플랜 비용 부담금을 감소시켜 실버플랜의 보험료가 가족 전체 소득의 2%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체 FPL 구간의 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험 수혜 대상과 지원금 규모를 확대함
- 그 외에도 ARP Act는 통합예산조정법(the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COBRA)에 따라 비자발적 해고 또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건강보험을 상실한 개인과 가족들에 대해 최대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임시로 보조하는 등의 건강보험 분야 관련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음⁶⁾
-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플랫폼 회사인 Stride의 데이터에 따르면, ARP Act에 따른 ACA 보조금 지원 확대의 영향으로 2021년 4월 공연 근로자 등 깃(Gig) 근로자의 ACA Marketplace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보험료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⁷⁾
- 특히 건강보험에 가입한 차량 공유 및 배달 근로자 중 약 60%가 보장범위가 넓은 건강보험상품(실버, 골드, 플래티넘)에 가입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보험료는 3월 \$171에서 4월 \$80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음
- 또한 미국 보험청(Centers for Medicaid&Medicare Services; CMS)의 보고서⁸⁾는 ARP Act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험료 인하로 4월 이후 가입자 34%가 월 \$10 이하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저렴한 상품에 가입하였으며, 개인 건강보험의 전체 가입자 수도 증가하여 건강보험 회사들이 팬데믹 호황(Pandemic boost)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함

4) Health Insurance.org(2021. 6. 9), "ARP Puts More 'Affordable' in the Affordable Care Act"

5) 해당 주에서 두 번째로 저렴한 실버플랜으로 보조금 기준으로 사용됨

6) ProBenefits(2021. 5. 12), "American Rescue Plan Act Includes 100% COBRA Subsidy"

7) Forbes(2021. 7. 21), "Gig Workers Paying 54% Less For Health Insurance, New Data Shows"

8) CMS(2021. 6. 30), "2021 Marketplace Special Enrollment Period Report"

- 미국 보험청(CMS)의 6월 건강보험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2월 15일 이후 150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시장을 통해 개별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 중 60만 명이 해당 주의 ACA Marketplace를 통해 개별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2. 호주 부가보험 판매 유예제도 시행

○ 호주에서는 부가보험(Add-on insurance product)이 보험료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소비자 불만족을 야기한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해 왔음⁹⁾

- 부가보험이란 상품·서비스 판매 시 이와 함께 또는 이와 연계되어 판매되는 보험상품을 의미하며, 상품·서비스와 관련한 여러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임
 - 부가보험의 예로는 소비자신용보험(Consumer credit insurance), 여행자보험(Travel insurance), 휴대폰 화면 보호 보험(Mobile phone screen protection insurance) 등이 있음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보험 소비자들이 부가보험에 고가의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가격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내용의 보고서¹⁰⁾를 발표해옴
 - 자동차 야적장에서 판매되는 부가보험(Car-yard add-on insurance)의 경우, 소비자가 보험료로 지불한 1호주달러 중 보험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9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대출 기관이 판매하는 소비자신용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지불한 보험료 1호주달러당 19센트만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남
- 호주의 Royal Commission¹¹⁾은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보다 높은 금액을 부가보험 판매인¹²⁾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함
 - 또한 동 기관은 부가보험 판매시장은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상품의 가치가 낮으며, 소비자는 불공정 판매로 인한 피해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언급함

9) <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id/77435/Type/eDaily/Australia-ASIC-releases-guide-to-implement-new-add-on-insurance-deferred-sales-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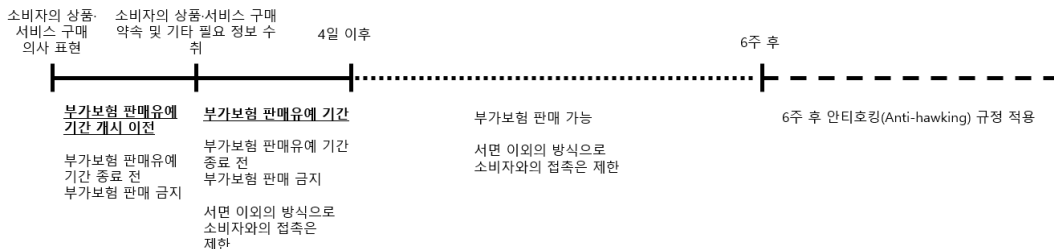
10) <https://asic.gov.au/about-asic/news-centre/find-a-media-release/2021-releases/21-189mr-asic-releases-guidance-and-customer-information-requirements-to-implement-the-new-add-on-insurance-deferred-sales-model/>

11) 은행, 연금 및 금융서비스 산업의 위법 행위를 감시하는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into Misconduct in the Banking, Superannuation and Financial Services Industry)로 금융시스템의 부적절한 영업행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관임

12) 주로 상품·서비스 공급자나 이와 관련한 관계자를 의미함

- 2020년 12월 호주 정부는 상품·서비스와 부가보험 판매 사이에 4일간의 공백 기간을 설정하는 ‘부가보험 판매유예 모델’에 관한 법안¹³⁾을 통과시켰고, 이는 2021년 10월 5일부로 시행될 예정임¹⁴⁾
 - 호주 정부는 Royal Commission의 건의에 따라 2019년 9월 부가보험 판매에 관한 개혁안을 발표하였고 이듬해 12월 이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킴
 - 부가보험 판매유예 모델(Add-on insurance deferred sales model)이란 상품·서비스 판매에서 부가보험 판매를 분리하는 것으로 특정 상품·서비스와 부가보험 판매 사이에 4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함
 - 부가보험 판매유예 모델은 모든 판매채널에 적용되며 이는 대면채널과 온라인채널을 포함함
- 동 법률에 따라 부가보험 판매유예 기간 중 판매자는 부가보험을 판매할 수 없고, 판매 방식에 있어 서도 기간과 방법 등에서 여러 제약을 받게 됨
 - 부가보험 판매유예가 적용되는 기간은 소비자가 상품·서비스를 구매하기로 약속한 시점 이후 개시되며 그로부터 4일 이후에 종료되는데, 동 기간 동안 판매자는 부가보험을 판매할 수 없음
 - 부가보험 판매자는 상품 판매에 있어 기간과 방법면에서 제약을 받는데, 판매유예 기간 종료 이후부터 부가보험 판매유예 개시 후 6주 이내에만 판매가 허용되고, 서면을 통해서만 소비자와 접촉할 수 있음
 - 만일 부가보험 판매자가 부가보험 판매유예 개시 후 6주가 지난 이후에도 상품을 계속해서 판매할 경우, 부가보험 판매자와 소비자 간 체결한 계약은 안티호킹¹⁵⁾(Anti-hawking) 규정을 적용받게 됨

〈그림 1〉 호주 부가보험 판매유예 기간과 부가보험 판매 가능 시점



자료: ASIC(2020), “Financial sector reform (Hayne Royal Commission response) – protecting consumers bill 2020: Deferred Sales model for add-on insurance. Exposure draft explanatory materials”, p. 7

13) Financial Sector Reform (Hayne Royal Commission Response) Act 2020

14) <https://asic.gov.au/about-asic/news-centre/find-a-media-release/2021-releases/21-213mr-asic-s-approach-to-new-laws-reforming-financial-services-sector/>

15) 안티호킹(Anti-hawking)이란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보험회사가 임의로 소매고객(Retail clients)에게 전화나 대면접촉의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을 말함

○ 호주 정부는 부가보험 판매유예 모델을 모든 상품에 적용할 경우, 무보험이나 일부보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규제에서 예외로 적용되는 보험상품을 명시함¹⁶⁾

- 부가보험 판매유예 규정을 모든 부가보험상품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할 경우 부가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보험분야에서 소비자의 미진한 가입률로 일부보험이나 무보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호주 정부는 아래 보험상품의 경우 부가보험 판매유예 모델 적용 시 예외(면제)로 처리한다고 발표함
 - 자동차에 관한 제3자 의무보험, 자동차에 관한 제3자 재산피해, 화재 및 도난에 관한 보험
 - 보트, 오토바이, 캠핑카, 캐러밴 및 트럭에 대한 종합보험
 -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서 판매되는 보험(단체 생명보험 포함)
 - 소비재의 운송 및 배달에 관한 보험(Postage and delivery of consumer goods insurance)
 - 주택 건설 보험(Home building insurance)
 - 주택 및 주택소유물 보험(Home and contents insurance)
 - 임대인 보험(Landlord insurance)

○ 호주 정부는 부가보험 판매유예 규정 도입으로 부가보험 판매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구도가 확립되고 불공정 판매 관행이 개선되는 등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부가보험 판매유예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소비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부가보험의 가치와 이를 타 상품과 비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됨
- 부가보험 판매자 또한 공정한 판매 관행을 바탕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설계에 집중할 수 있고, 이는 정확한 고객층 타겟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동 법안의 도입은 상품가치가 낮은 부가보험 판매를 줄여 소비자의 불만을 낮출 수 있으며 부가보험 판매시장의 전반적인 투명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3. 독일 풍수해보험 의무화 제도에 대한 찬반 논의

○ 2021년 7월 중순 독일 서부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1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약 70억 유로에 달하는 보험 손실의 발생이 예상됨

- 기후변화 연구단체인 세계기후특성(WWA)과 독일 기상청이 이번 기상이변 현상에 대해 수행한 공동 연구에서 이번 집중호우와 기후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줌

16) <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id/77247/Type/eDaily/Australia-Govt-accused-of-watering-down-reforms-by-allowing-exemptions>

- 동 연구는 19세기 말부터 지구 평균 온도가 1.2도 증가하여, 폭우 발생 확률은 1.2배에서 9배, 강수량은 3%에서 19%까지 상승한 사실을 밝혀냄¹⁷⁾
- 이번 홍수로 인해 라인란트-팔츠 및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300명 이상이 실종된 인명피해가 발생함¹⁸⁾
- 독일보험협회(GDV)에 따르면, 총 70억 유로의 보험 손실 중 65억 유로는 주거용 건물, 가재도구, 사업체 등의 재물 손실액으로, 4억 5천만 유로는 자동차 손실로 인한 것으로 나타남
- 독일 연방 정부는 향후 300억 유로의 재건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해당 기금은 풍수해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재건비용으로 쓰일 예정임¹⁹⁾

○ 현재 독일에서는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낮고, 지역마다 극심한 보험 밀도 차이가 존재함

- 독일 소비자연합(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건물 소유자의 46%만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²⁰⁾
- 또한 서독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94%에 달하지만 북독일 연방주들의 가입률은 30%를 밑돌아, 지역마다 극심한 보험 밀도 차이를 보임²¹⁾
 - 이에 대해 독일 피보험자협회(Bund der Versicherten)는 자연재해 위험 지역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되고, 부과된 높은 보험료에 합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을 지적함²²⁾

○ 이에 따라 독일 정계 및 보험업계 등은 풍수해보험 의무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 정계, 학계 및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풍수해보험 의무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개인이나 회사의 차원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함
 - 올라프 쉘츠(Olaf Scholz) 연방부총리 겸 재정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풍수해보험의 의무화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임과 동시에 연방 및 주정부가 참여하는 재난기금의 설립을 촉구함²³⁾

17) World Weather Attribution(2021), "Rapid attribution of heavy rainfall events leading to the severe flooding in Western Europe during July 2021"

18) TZ(2021. 7. 16), "Unwetter in Deutschland: Immer mehr Todesopfer – Zahl der vermissten Personen springt auf über 1300"

19) Tagesschau(2021. 8. 18), "Kabinett beschließt Hochwasser-Fonds"

20) Versicherungsbote(2021. 8. 10), "Elementarversicherung: Verbraucherzentrale fordert Reformen für bezahlbaren Schutz"

21) GDV(2020), "Serviceteil zum Naturgefahrenreport 2020"

22) Tagesspiel(2021. 7. 19), "Welche Hilfen die Betroffenen jetzt erhalten sollen"

23) Tagesschau(2021. 8. 1), "Scholz offen für Pflichtversicherung"

- 요아힘 베닝(Joachim Wenning) 뮌헨리(Munich Re)의 CEO는 지역마다 다른 자연재해 리스크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의 풍수해보험 의무화에 찬성하면서도, 보험회사가 독자적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풍수해보험금 부담을 감당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함²⁴⁾
- 다른 일각에서는 연방기본법(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를 시사하며, 풍수해보험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독일 소비자연합은 풍수해보험 의무화가 연방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계약자유의 원칙(Prinzip der Vertragsfreiheit)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 따라서 의무화보다는, 풍수해보험을 전 위험담보상품(Allgefahrenversicherung)으로 법제화하여,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담보 항목을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²⁵⁾
 - 헤르베르트 메르틴(Herbert Mertin) 라인란트-팔츠주 법무부장은 소수의 보험계약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가 다수의 피보험자에게 전가되는 형평성의 문제와 의무화로 인해 행정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점에서 우려를 표함²⁶⁾
- 그러나 한편으로는 풍수해보험 의무화로 보험계약자가 피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의무화가 보험계약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함
 - 독일 보험협회는 풍수해보험 의무화로 인해 보험계약자인 주택소유자와 기업이 자연재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무보험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임²⁷⁾
 - 그러나 이와 반대로 클라우디아 켐페르트(Claudia Kemfert) 독일 경제연구소(DIW) 박사는 풍수해보험의무화로 계약자 개개인에게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²⁸⁾

○ 독일 내에서 풍수해보험 의무화에 대한 논의는 2003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무산된 바 있지만, 독일 연방정부는 해당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함²⁹⁾

24) SPIEGEL(2021. 8. 2), "Chef der Munich Re offen für Pflichtversicherung gegen Hochwasser"

25) Versicherungsbote(2021. 8. 10), "Elementarversicherung: Verbraucherzentrale fordert Reformen für bezahlbaren Schutz"

26) SWR(2021. 8. 26), "Nach Flutkatastrophe: Lewentz fordert Pflichtversicherung"

27) Handelsblatt(2021. 7. 23), "GDV: Pflichtversicherung für Elementarschäden allein nicht die Lösung"

28) ZDF(2021. 7. 29), "Pflichtversicherung: Das Für und Wider"

29) Deutscher Bundestag(2021. 7. 25), "Elementarschadenversicherung: Zur Frage der Einführung einer Versicherungspflicht"

4. 유럽보험감독청(EIOPA)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원칙 보고서 발간

- 2021년 6월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이하, 'EIOPA'라 함)은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된 최근 유럽연합(EU)의 동향을 반영하여 보험 부문 내 인공지능 거버넌스 원칙 보고서를 발표함³⁰⁾
- 인공지능이 유럽 사회와 경제의 디지털 미래를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이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관련 법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음
 - 2019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설립한 인공지능 고위전문가그룹(AI-HLEG)은 추후 인공지능 관련 법규에 포함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담은 '신뢰할 만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음³¹⁾
 - 2021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의 위험 수준을 정의하고 위험에 따른 차등 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인공지능법 초안을 세계 최초로 발표함³²⁾
 - EIOPA는 위와 같은 유럽연합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험 가치사슬에서 활용 빈도가 높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거버넌스 원칙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함

〈표 2〉 보험 가치사슬 내 AI 활용 사례

가치사슬	내용
상품 설계와 개발	• 신제품 출시를 알리기 위한 기존 고객 및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 • 질병 유발 패턴 예측 모델링 • 지수형 보험 및 습관 연계 보험과 같은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가격책정과 언더라이팅	• 기존 데이터 소스와 새로운 데이터(IoT 데이터 등)의 결합을 통한 리스크 평가 • 가격 탄력성, 고객생애가치³³⁾ 및 이탈 성향 추정 등 무위험 개인 행동 데이터 및 시장 경쟁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가격 책정
판매와 유통	• 온라인 검색 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마케팅 • 고객과의 소통을 지원하는 자연어 처리(NLP)기술에 기반한 가상 비서와 챗봇 • 고객 관계 관리(CRM) 시스템의 소비자 데이터에 기반한 사전 고객 커뮤니케이션, 넷징³⁴⁾ 및 관련 서비스 교차 판매

30) EIOPA(2021. 6. 17),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PRINCIPLES: TOWARDS ETHICAL AND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EUROPEAN INSURANCE SECTOR"

31) High-Level Expert Group on AI(2019. 4. 8), "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32) EU(2021. 4. 21),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표 2〉 계속

가치사슬	내용
고객 서비스	• 콜센터 감정 분석,³⁵⁾ 문제 원인 분석 및 중개인 분배 등 • 음성인식, 챗봇 등을 활용한 다채널 고객 셀프서비스 • 컴플레인 메일, 첫 손실 접수(FNOL) 등의 문서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담당 부서로 이관하기 위한 로보틱 처리 자동화(RPA)
손해 예방	• 건강 및 자동차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운동 및 운전 습관 제안
청구 관리	• 클레임 스코어링, 이상 감지, 소셜 네트워크 분석 및 행동 모델링을 통해 고도화된 보험사기 분석 • 청구 빈도가 높은 경우 손실 추정을 위해 AI를 활용하여 손해 예상액 판단 • AI 이미지 인식 기술을 통해 가계 보험, 사업장 및 자동차 수리 비용 추정 • 유형과 복잡도에 따른 청구 건 자동 세분화, 청구서 확인 작업 및 지불 프로세스 자동화

자료: EIOPA(2021. 6. 17), “Artificial intelligence(AI) governance principles for an ethical and trustworthy AI in the European insurance sector”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함

- 해당 보고서는 보험 부문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위한 6가지 거버넌스 원칙을 소개함

〈표 3〉 EIOPA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원칙

원칙	내용
비례성	• 보험회사는 AI 사용 사례에 대한 영향 평가를 수행하여 각 사례에 따른 적절한 거버넌스 조치를 결정해야 함 • AI 사용 영향 평가 및 거버넌스 조치는 특정 AI 사용 사례가 소비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비례해야 함 • AI의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평가를 이행해야 함
평등 및 차별금지	• 보험회사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³⁶⁾을 고려함으로써, 기존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예를 들어, 고객의 지불의향을 최대화하기 위해 A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을 최적화하려는 관행은 지양해야 함³⁷⁾ • 데이터를 공정히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고객의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 데이터 및 AI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33) 고객생애가치(Customer Lifetime Value, CLTV)란 소비자와 기업 비즈니스와의 관계에서 소비자가 기업에 기여하는 총 가치를 의미함

34) 넛징(Nudging)이란 강압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으로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35) 감정분석(Sentiment analysis)이란 자연어 처리에 속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한 분야로, 텍스트나 화자의 음성 특징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모델화하여 시스템적으로 화자의 감정상태를 분석하는 기술임

〈표 3〉 계속

원칙	내용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 보험회사는 강한 파급력을 가진 AI 기술을 이용할 때, 설명 가능한 AI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고객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의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한 AI 모델을 사용해야 함 • 고객이 AI와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따른 한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인간에 의한 감독	• 보험회사는 AI의 수명 주기 동안 AI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감독방안을 수립해야 함 • AI 프로세스에 관련된 직원에게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할당해야 함 • AI가 직원의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함
기록보관 데이터 거버넌스	•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AI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건전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기반이 되어야함 • 보험회사는 AI 시스템에서 이용되는 내·외부 데이터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적절한지 확인해야 하며, 일관된 데이터 거버넌스 표준을 적용해야 함 • 데이터를 안전한 환경에 저장해야 하며, 강한 파급력을 지닌 AI 사용 사례의 경우, 추적 및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및 모델링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기록해야 함
건고성 및 성능	• 보험회사는 AI 기술을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잠재적인 보안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건고한 AI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 AI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함 •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탄력적이고, 안전한 IT 인프라 내에서 AI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자료: EIOPA(2021. 6. 17), "Artificial intelligence (AI) governance principles for an ethical and trustworthy AI in the European insurance sector"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함

- EIOPA가 제시한 거버넌스 원칙은 법적 구속능력은 없는 전문그룹의 권고사항이지만, 향후 보험업계가 실무에서 AI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함에 있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5. 영국과 프랑스의 지급여력제도 솔벤시 II 개정논의

- 브렉시트 이후 유럽과 영국에서는 각각의 솔벤시 II 개혁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위험마진과 변동성 조정 또는 매칭 조정을 중심으로 한 현 논의에서는 저금리와 기후변화에 대한 시각이 부각되고 있음
 - 유럽과 영국은 각각 솔벤시 II 검토를 진행 중이며 유럽연합은 2022년 말까지 협상을 종료하고 2023년 말경 새로운 체제의 시행준비를 마칠 계획³⁸⁾인 한편, 영국 재무부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영국의 독자적 상황에 맞는 개혁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힘³⁹⁾

36)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이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책 및 운동을 포괄하는 개념임

37)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보험회사가 보험을 변경할 가능성이 낮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가격 인상을 시도했다는 증거를 발견하고 가격 책정 관행에 대한 시장조사를 수행한 바 있음

38) IPE(2021. 4. 30), "EU Commission set to deliver proposals to reform Solvency II by July"

- 프랑스와 영국의 보험업계는 현행 솔벤시 II 기준의 위험마진과 변동성 조정 또는 매칭 조정이 저금리 환경에서 과도한 요구자본 산출로 이어질 뿐 아니라 환경친화적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현행 솔벤시 II에서 위험마진(Risk margin)⁴⁰⁾은 현재의 저금리 환경에 맞지 않게 규범적으로 정해져 있어 보험회사가 지나치게 많은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짐

- 현행 위험마진의 문제점이 과도한 ① 변동성(Volatility) 및 ② 규모(Size)라는 데 있어서는 정부와 보험산업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임
 - 현행 위험마진 산출식은 ① 금리에 민감한 구조로 인해 위험마진의 변동성을 높인다고 지적되며, ② 6%로 고정되어 있는 자본비용(Capital of Cost; CoC)과 금리에 민감한 구조로 인해 저금리 환경에 맞지 않는 과도하게 큰 위험마진을 도출한다고 지적됨(〈표 4〉 참조)
 - 프랑스 보험협회 FFA(Fédération Française de l'Assurance)는 2020년 위험마진의 규모가 프랑스 보험회사들이 보유하는 자기자본의 12%를 초과하였다고 보고함⁴¹⁾

〈표 4〉 유럽의 위험마진 개정 논의

구분	내용
현행 솔벤시 II	$Risk\ Margin = CoC * \sum_{t \geq 0} \frac{SCR_t}{(1 + r_{t+1})^{t+1}},$ with CoC = 6%
EIOPA의 제안	$Risk\ Margin = CoC * \sum_{t \geq 0} \frac{\max(\lambda^t, floor) * SCR_t}{(1 + r_{t+1})^{t+1}},$ with CoC = 6%, $\lambda = 0.975$, floor = 50%

- 프랑스가 속한 유럽의 보험감독기구 EIOPA(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위험을 반영하기 위한 요소인 λ 를 도입하여 위험마진의 크기를 줄일 것을 제안하였으며(〈표 4〉 참조), FFA도 이 방향에 동의함
 - FFA는 λ 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본비용(CoC)을 3%로 낮춘다면 프랑스 보험회사들의 자기자본이 60억 유로만큼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함⁴²⁾

39) Insurance Times(2021. 7. 2), "Government confirms Solvency II reform to provide 'more proportionate and flexible' regulation"

40) 위험마진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론적 금액을 산정할 때 최선추정치에 더하는 금액으로서, 현행 솔벤시 II에서는 200년에 한 번 발생할 확률의 불확실성에 대한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음

41) FFA(2021. 7. 27), "Solvency II review: for a sustainable and competitive european economy", p. 7

- 영국에서는 현행 위험마진의 규모를 20%에서 75%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됨⁴³⁾
 - 위험마진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자본비용(CoC)을 낮추는 방법, EIOPA가 제안한 λ를 도입하는 방법, 국제기준 ICS의 백분위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 등이 제안됨

○ 변동성 조정(Volatility adjustment) 및 매칭 조정(Matching adjustment)의 경우,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보험회사의 투자를 저해하고, 특히 정부의 기후변화 목표에 부합하는 투자마저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변동성 조정 및 매칭 조정의 목적은 할인율을 조정하거나 장기자산을 부채와 매치시킴으로써 요구자본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인데, 보험산업 측에서는 이러한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의 90% 이상이 변동성 조정을 통해 산출되는 반면, 영국에서는 변동성 조정보다는 매칭 조정을 통해 산출한 책임준비금 금액이 더 큼⁴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변동성 조정에 대한 논의가, 영국에서는 매칭 조정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짐(〈그림 2〉 참조)
 - 영국 보험협회 ABI(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는 솔벤시 II 개혁을 통해 950억 파운드를 추가적으로 투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중 63%를 차지하는 600억 파운드가 매칭 조정 개혁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함⁴⁵⁾
- 최근 유럽 EIOPA는 변동성 조정에서 모든 보험회사에 일괄적용되는 일반적용비율(General Application Ratio; GAR)⁴⁶⁾을 현행 65%에서 85%로 높일 것을 권하면서 변동성 조정의 과잉작용을 막기 위한 보험회사별 요소 AR₄⁴⁷⁾의 도입을 제안하는 한편, 부채의 유동성을 반영하기 위한 요소 AR₅⁴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표 5〉 참조)

42) FFA(2021. 7. 27), "Solvency II review: for a sustainable and competitive european economy"

43) 영국 재무부(2021. 7. 1), "Review of Solvency II: Call for Evidence – Response"; 재무부에 피드백을 제출한 64개 기관은 25개의 보험회사 및 각 산업의 대표 기관, 로펌, 컨설팅 회사,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됨. 이들은 솔벤시 II를 완전히 새로운 제도로 대체하는 것에는 비용을 이유로 반대하였지만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44) 변동성 조정은 EIOPA의 참조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하고, 매칭 조정은 각 보험회사의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음. 영국의 경우 매칭 조정을 사용한 책임준비금이 약 53%로 조사됨(EIOPA(2020), "Report on long-term guarantees measures and measures on equity risk 2020")

45) ABI(2021. 2. 23), "Post-Brexit reforms to financial regulations could release £95bn to boost the UK economy and tackle climate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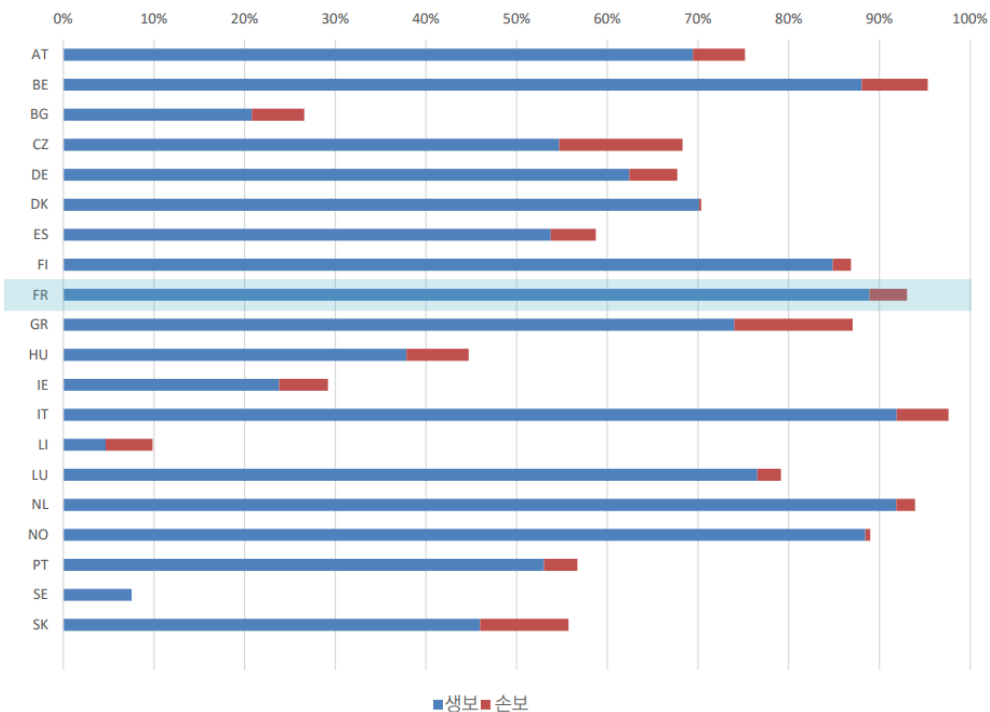
46) 솔벤시 II 변동성 조정을 적용하는 유럽의 회원국은 해당 통화의 통화 스프레드(참조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무위험 수익률 간 차이)를 위험 조정(Risk-correct)한 값의 특정 비율(현행 65%)을 변동성 조정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정 비율 요소를 GAR이라 함. GAR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변동성 조정의 과잉작용이 일어나고 그만큼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을 줄여 부실해질 수 있음; Solvency II Directive의 Article 77d (3)

47) AR₄의 값은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불일치 및 금액 불일치를 측정함으로써 결정됨(EIOPA(2020. 12), "Opinion on the 2020 Review of Solvency II", p. 17)

48) AR₅의 값은 부채의 유동성을 미래 현금흐름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에 따라 세 가지 범주(높은 비유동성, 중간 비유동성, 낮은 비유동성)로 분류함으로써 결정됨(EIOPA(2020. 12), "Background Document on the Opinion on the 2020 Review of Solvency II", p. 861)

- 그러나 프랑스 FFA는 자산의 강제매각 위험을 이유로 AR₅의 도입을 반대하고 GAR은 100%로 높일 것을 제안하는 등 현행보다 요구자본을 낮춤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을 제안함
- 영국에서는 현행 매칭 조정의 이분법적이고 경직된 기준을 원칙 중심의 기준으로 변경하여 매칭 조정의 대상자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며, 일각에서는 지속가능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됨⁴⁹⁾
 - 영국 ABI는 현행 기준의 경우 신용등급이 높은 탄광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30년 동안 풍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지적하며 현행 기준이 기후친화적 투자를 저해한다고 주장함⁵⁰⁾
 - 지속가능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좌초자산⁵¹⁾을 매칭 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 ‘녹색자산’⁵²⁾ 투자에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제시됨

〈그림 2〉 유럽(EEA)의 국가별 변동성 조정 사용 책임준비금 비중



자료: EIOPA(2020. 12. 3), “Report on long-term guarantees measures and measures on equity risk 2020”

49) 영국 재무부(2021. 7. 1), “Review of Solvency II: Call for Evidence-Response”

50) ABI(2021. 2. 23), “Post-Brexit reforms to financial regulations could release £95bn to boost the UK economy and tackle climate change”

51) 여기에서 좌초자산(Stranded assets)이란, 현금흐름이 화석연료 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활동에 의존하는 자산을 가리킴

52) 녹색자산(Green assets)의 정의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도모하는 자산을 녹색자산이라 표현하며, 영국에서는 매칭 조정 개선을 위하여 녹색자산 및 이에 반대되는 갈색자산(Brown assets)을 신용평가과정에서 분류하도록 하자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함

〈표 5〉 유럽의 변동성 조정 개정 논의

구분	내용
EIOPA의 제안	i 보험회사, j 국가에 대하여
	$VA^i = VA_{perm}^i + VA_{macro,j}^i$
	$VA_{perm}^i = GAR \cdot AR_4^i \cdot AR_5^i \cdot Scale \cdot RC_S$
	$VA_{macro,j}^i = GAR \cdot AR_4^i \cdot AR_5^i \cdot w_j \cdot \max(RC_S_j \cdot Scale_j - 1.3 \cdot RC_S \cdot Scale; 0)$

자료: EIOPA(2020. 12), "Background Document on the Opinion on the 2020 Review of Solvency II"

- 이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영국 재무부 또한 기후변화 목표에 부합하는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여력제도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⁵³⁾ 영국의 경우 감독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음
 - 영국 건전성감독청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는 완화된 자금이 투자가 아닌 주주배당으로 이용될까 염려하며, 자본 감소로 보험계약자 보호가 침해될 것을 우려하여 개혁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비침⁵⁴⁾
 - 이에 반해 영국 보험협회 ABI는 위험마진을 감축시켜도 그 효과는 일정 부분 책임준비금 경과조치의 감소로 인해 상쇄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 보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함⁵⁵⁾

6. 중국 감독당국의 온라인보험 시장질서 교란행위 단속 시행

- 현재 대다수의 중국 보험회사들은 온라인채널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온라인채널에서 주로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보장기간이 짧거나 상품구조가 간단한 상품에 집중됨
 - 2020년 중국에서 온라인채널을 이용하는 보험회사 수는 134개로 전체 보험회사의 약 80%를 차지하였으며, 온라인채널 수입보험료가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 정도로 나타남
 -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중안온라인보험회사, 태강온라인보험회사, 이안온라인보험회사 및 안심온라인보험회사 등 4개사는 온라인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전문보험회사임

53) Insurance ERM(2021. 3. 18), "European Commission signals directions for Solvency II review"

54) Financial Times(2021. 8. 12), "Stand by for City tussle over post-Brexit regulation"

55) ABI(2021. 5. 24), "Revisions to Solvency II guidance have potential to release capital to invest in growth of the UK economy"

- 온라인채널에서 판매되는 생명보험상품은 보험기간이 짧은 정기보험, 연금보험, 자기부담금이 높은 의료보험 등이며, 손해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 여행보험, 휴대폰액정파손보험, 항공지연보험, 소포반송보험 등이 온라인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음
- 사망보험 및 가계성 손해보험 등 보장기간이 길거나 상품구조가 복잡한 보험상품은 대면영업의 비중이 높아 온라인채널을 통한 판매는 아직 미미한 실정임

○ 최근 몇 년간 중국 온라인보험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온라인보험 민원 건수는 급증하고 있음

- 중국 온라인보험 수입보험료는 2020년 2,909억 위안으로 2013년 291억 위안 대비 연평균 38.9% 증가함
- 특히 온라인보험 중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2020년 375억 위안으로 2016년 32억 위안 대비 연평균 85.3% 증가함
- 반면 온라인보험 관련 민원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7년 63.1%, 2018년 121.0%, 2019년 88.6%로 매우 높은 상승폭을 유지함
- 온라인보험 관련 민원 발생 원인은 불충분한 보험상품 설명, 불합리적인 보험금 청구 조건,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끼워 팔기, 가입자 동의가 없는 자동갱신 등으로 나타남⁵⁶⁾

○ 2021년 8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보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함

- 2020년 12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새로운 '온라인보험 관리방법'을 발표하여 온라인보험 사업자에게 2021년 7월까지 부정한 영업행위를 시정하도록 요구함
- 새로운 '온라인보험 관리방법'은 2021년 2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규제 강화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온라인보험 사업자에게 과도기를 제공하였음
- 새로운 관리방법은 보험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무허가 사업자의 온라인보험 판매를 금지하고 온라인보험 사업자의 판매책임을 강화함
- 온라인보험 사업자는 온라인보험 판매자격을 취득하는 보험회사, 보험대리회사, 보험중개회사, 온라인 플랫폼으로 한정되며, 온라인보험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 홍보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온라인보험 관련 판매책임을 지도록 요구함
- 이번에 시행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은 새로운 '온라인보험 관리방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온라인보험 사업자의 부정한 영업행위 시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임⁵⁷⁾
-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온라인보험 사업자로 하여금 45일 내에 스스로 점검토록 하고 이후

56) 이소양(2020. 3), 「중국, 『온라인보험 관리방법』 초안 발표와 영향」, 글로벌 이슈,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57) 中国经营报(2021. 8), “消费者投诉三年暴涨7倍 互联网保险迎监管重拳整治”

문제가 심각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함

- 새로운 '온라인보험 관리방법'은 온라인보험 사업자에게 부정한 영업행위 개선을 요구했지만 중안보험회사, 안심보험회사, 청송보중개회사 등의 온라인보험 사업자는 여전히 불완전판매로 적발됨

○ 이번에 시행된 온라인보험 시장질서 교란행위 단속 대상은 온라인보험 사업자의 부정한 영업행위 외에도 불법 또는 부정경영, 고객정보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음⁵⁸⁾

- 부정한 영업행위는 보험상품 관련 사실 은폐행위, 불충분한 설명, 불고지 행위, 끼워 팔기, 유도 판매 등의 행위가 있음
- 불법 또는 부정경영 문제는 사업비 과다 책정, 부당한 보험료 책정, 애프터서비스 품질 문제 등이 있으며, 고객정보 보호 문제는 고객정보 수집 및 보호 문제 등이 있음

○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급증한 온라인보험 민원 유형을 반영해 과거에 합리적인 관행으로 받아들였던 아래와 같은 영업행위를 이번 특별단속에서 부정한 영업행위로 규정하였음⁵⁹⁾

- '첫 달 보험료 무료', '첫 달 보험료 차감 혜택 제공' 등과 같은 홍보문구를 사용해 전체 납입보험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행위
- '무료 가입', '무료 제공' 등과 같은 홍보문구를 사용해 보험가입을 유도해 보험계약 유지 시 보험료를 수취하는 행위, '한정수량 판매', '한시 판매', '한시 혜택' 등과 같은 홍보문구를 사용하는 절판마케팅 행위
- '공유 시 선물 증정', '보너스 지급'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수익자에게 보험계약에 없는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기술 서비스 비용', '마케팅 홍보비용', '교육비' 등과 같은 명의로 온라인보험 판매자격이 없는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
- 부당한 홈페이지 구조로 '자동 갱신'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갱신 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자가 '자동 갱신'을 간편하게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이번 특별단속의 영향으로 2021년 온라인보험시장 수입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온라인보험 전문보험회사 및 온라인 플랫폼이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대상이므로 이들의 온라인보험 판매실적 감소로 2021년 전체 온라인보험 수입보험료는 감소할 수 있음
 - 이는 온라인보험 전문보험회사 및 온라인 플랫폼이 전체 온라인보험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크기 때문임

58) 券商中国(2021. 8), “银保监会专项整治互联网保险乱象, 聚焦四大领域”

59) 君合(2021. 8), “互联网保险新规发布后的首次“回头看”-银保监会开展互联网保险乱象专项整治”

- 다만 MZ세대 소비자의 부상, 보험회사의 온라인채널 강화 및 IT회사의 보험산업 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중국 온라인보험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⁶⁰⁾
 - 중국 차옌잔산업연구원은 온라인보험이 2021년부터 매년 10%씩 성장할 경우, 온라인보험 수입보험료는 2026년 4,700억 위안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7. 일본 건강경영 인센티브 정책과 보험산업 활용

-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근로자의 건강관리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건강친화기업 인증제가 실시될 예정임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란 개정 법률⁶¹⁾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수기업에게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임⁶²⁾
 - 본격적인 실시에 앞서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효과적인 인증제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하위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임
 - 이에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일본의 '건강경영 우량기업 인증제' 실시 현황과 주요 인센티브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보험회사의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함
- 일본은 건강경영 우량기업 인증제 실시에 앞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건강경영제도를 2014년에 도입하였음
 - 주요 도입 배경은 정부가 사회보장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건강수명 연장을 포함한 제2차 '건강일본 21(2013~2023)' 정책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조합에서 만성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건강수명 연장과 연계한 민간 서비스 산업을 미래 국가 성장전략⁶³⁾으로 채택하였음
 - 건강경영이란 '장시간 근로와 직장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만성질환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 경영적 관점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투자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유지와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경영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음⁶⁴⁾

60) 前瞻产业研究院(2021. 6), "中国互联网保险行业商业模式与投资战略规划分析报告"

61) 개정 국민건강증진법(2019. 12. 3)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됨

62) 보건복지부(2021. 5. 18),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설명회 개최」

63) 内閣部(2013), "日本再興戰略 2013"

64) 経済産業省(2020. 9), "健康経営の推進について"; '건강경영'은 미국 임상심리학자 Robert H. Rosen(1992)의 저서 *The Healthy Company*에서 정립된 개념으로 일본에서는 2006년에 처음 사용됨

- 이에 일본은 건강경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기업 선별을 목적으로 민관이 협업하여 ‘건강경영 종목’과 ‘건강경영 우량기업 인증제도⁶⁵⁾’를 각각 2015년, 2017년에 실시하였음
 - 건강경영 종목은 근로자 건강관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상장기업을 정부와 증권거래소가 평가하여 선정한 종목이며, 현재 CSR(사회적 책임경영) 또는 ESG 투자지표에 활용하기 위해 준비 중임
 - 동 종목은 기업의 실태조사 및 재무지표 등의 평가를 통해 총 33개 업종 중에서 원칙적으로 업종별 우수 기업 1개사를 대표 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2021년 3월 기준으로 총 29개 종목에서 48개사가 선정되었음

- 건강경영 우량기업 인증제도는 일본건강회의⁶⁶⁾가 기업의 건강경영 실태를 평가하여 우량기업에게 인증서(예: 건강경영우량기업 2021)를 수여하는 인증제도임
 - 일본건강회의가 인증을 신청한 기업의 건강경영을 평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된 500대 우량 기업에게 ‘대기업·중소기업 화이트 500’을 각각 표창하고, 나머지 기업에게는 인증서를 수여함
 - 인증서 신청은 대기업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한 건강경영 순위 상위 50% 이내이고, 중소기업은 직장 건강보험조합의 ‘건강선언’ 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 자격이 제한됨
 - 인증서 유효기간이 1년으로 기업이 매년 재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자의 건강 개선과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목표치 제출 요구 등 매년 평가가 구체화되고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음

- 정부의 건강경영 촉진 정책과 이에 적극 호응하는 일본 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증 신청 기업이 크게 증가하는 등 최근 일본에서는 건강경영이 기업경영의 중요한 트렌드로 정착되고 있음
 - 2017년에 인증제도가 실시된 이후 2021년 3월 기준으로 대기업 1,801개가 인증을 받고, 중소기업 7,934개가 인증을 받았으며, 신청 기업의 인증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71.4%, 86.4%임
 - 또한, 상공회의소가 2018년 10월에 건강경영 지도사(건강경영 어드바이저)를 신설하여 1,000명 이상을 배출하는 등 건강경영 정책이 향후 고용 창출과 관련 기업 매출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65) 일본에서 공식 명식은 ‘건강경영 우량법인 인정(認定)제도’임

66) 건강수명 연장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경제산업성, 경단연(전경련), 의료단체, 지자체로 구성된 공사 회의기구임

〈표 6〉 건강경영 우량기업 인증서 발급 추이

(단위: 개,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3
대기업	235	541	821	1,481	1,801
대기업 인증률	32.4	43.7	45.6	63.6	71.4
중소기업	318	775	2,501	4,813	7,934
중소기업 인증률	80.1	95.0	86.3	79.0	86.4

주: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임

자료: 経済産業省(<https://www.ewel.co.jp/category/news-release/p18056/>)

- 일본 정부는 동기부여를 통한 기업의 종업원 건강관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 참여와 지원책을 계속 검토하고 있음
 - 현재 제공 중인 주요 인센티브는 중앙·지방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공사·입찰 시 가산, 장려금·보조금 우대 지원, 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각종 보험료 면제·할인 혜택 등의 유형이 있음
 - 경제산업성⁶⁷⁾에 의하면 2020년 3월 기준으로 14개 지자체에서 공사 및 조달 입찰 가점제 혜택을 제공하고, 16개 지자체에서 정책성 자금 대출 우대, 보험료 감액,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56개 금융기관에서 대출 우대, 보험료 감액, 보증보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보험회사는 인증 기업에게 단체·기업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향후 가입할 경우 약 0.8~5%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할인 혜택은 보험업계에서 확산되고 있음
 - 인센티브 제공 사업에 참여한 보험회사는 니혼생명, 다이이치생명, 미츠이생명, 스미토모생명, 도쿄해상, SOMPO재팬 등 총 6개사임
 - 대상 주요상품은 단체정기보험, 단체의료보험, 업무재해종합보험, 단체소득보상보험 등의 단체 및 기업성 보험이 주요대상임
- 최근에는 기업의 건강경영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과 종업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결합한 번들형 상품으로 개발하거나 건강경영 지원서비스를 단독으로 제공하는 보험회사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
 - 번들형 상품은 기업이 가입하는 단체·기업성 보험에 종업원 건강관리와 기업 건강경영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특약으로 부가된 형태이며, App이나 웨어러블을 활용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형 건강증진보험이 단체형으로 확대 발전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음

67) 経済産業省(2020), “『健康経営優良法人2021』について”

- 동 상품은 2017년 다이이치생명에서 처음 개발한 이후 메이지야스다, Metlife, 니혼생명, 미츠이생명으로 확산되고, 2020년 12월에는 미츠이스미토모해상, 아이오이닛세이손보가 동 상품을 판매하는 등 손해보험회사로 확산하고 있음

○ 단체형 서비스는 개인형에서 제공하는 개인의 건강관리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기업 요구에 따라 건강경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형으로 개발 및 제공하고 있음

- 주요 옵션 서비스는 최종적으로 기업이 건강경영 우량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종업원 건강 및 스트레스 상담, 건강상태 분석, 건강경영 컨설팅, 우량기업 신청 위탁서비스 등이며, 현재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나 타사와 위탁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의 경우 기존 사업라인에 추가적으로 건강경영 종합 서비스가 추가됨에 따라 번들형 또는 단독 서비스 제공에 의해 향후 그룹사 시너지와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건강경영 종합 지원 사업에 니혼생명, 다이이치생명, SOMPO홀딩스그룹 등이 참여하고 있음

II

해외 보험산업 시장 현황

1. 미국 아마존의 제조물 결함에 대한 보증 확대와 자체 보험 네트워크 도입

- 미국의 대표적인 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Amazon)은 자체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제조물 관련 클레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A-to-Z 보증을 확대할 예정임¹⁾
 - 과거 아마존을 통한 거래에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재산 피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다소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클레임을 해결해야 했음
 - 또한 여러 소송에서 아마존은 자신들은 단순한 플랫폼의 역할만 수행할 뿐 제조물 결함에 책임이 없음을 주장해왔으나 제3자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아마존을 통해 판매된 경우 제조물 결함에 따르는 피해에 아마존 또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음
 - 2021년 4월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은 제3자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한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아마존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아마존이 제3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개자일 뿐이라는 입장을 기각함²⁾
 - 2021년 9월 1일부터 아마존은 자체 플랫폼(Amazon.com)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A-to-Z 보증 확대를 실시하고 아마존이 직접 개입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간 클레임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됨
- A-to-Z 보증은 아마존 플랫폼에서 제3자 판매자³⁾의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증으로 판매자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아마존이 직접 개입하여 클레임을 해결함으로써 아마존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음
 - A-to-Z 보증은 \$1,000 미만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 피해나 손해 보상청구를 아마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아마존의 판매자 정책을 준수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등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1) <https://sellercentral.amazon.com/>

2) Los Angeles Times(2021. 4. 29), "California Appeals Court Finds Amazon Responsible for Third Party Sellers' Products"

3) 제3자 판매자는 아마존 자체 판매가 아닌 아마존에 입점한 판매자를 말함

- 그 외에 아마존은 판매자가 제기된 청구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아마존 자체적으로 판매자를 추적하는 등 소비자가 직접 해결해야 했던 부분을 아마존이 개입하여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힘
- 이전까지 아마존은 3개월 연속 매출이 \$10,000 이상인 판매자에 대해서만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와 아마존을 추가 피보험자로 지정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2021년 9월 1일 이후 A-to-Z 보증 확대에 따라 의무 부과 대상을 1개월 매출이 \$10,000 이상인 판매자로 확대함⁴⁾
 - 이전에 아마존은 제3의 판매자에 대해 판매제품의 위조, 안전 부적합, 유통기한 만료 등을 근거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와 아마존 추가 피보험자 지정 의무를 부과했음
- 아마존은 판매자 정책 변화에 따라 판매자들이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체 디지털 보험 네트워크인 Amazon Insurance Accelerator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판매자가 보다 용이하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⁵⁾
 - Amazon Insurance Accelerator에 참여하는 보험회사는 Chubb, Harbourway Insurance, Hiscox, Liberty Mutual Insurance, Travelers 등으로 향후 아마존 판매자들은 이러한 보험 네트워크를 통해 평판이 좋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Amazon Insurance Accelerator에는 보험회사 외에도 보험중개회사, 인수어테크 기업 등 다수의 보험 관련 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아마존 판매자들에게 적합한 보험회사를 선별하고 AI를 통해 해당 판매자에게 가장 적절한 보험상품을 제안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 보험중개회사 Marsh는 Amazon Insurance Accelerator에서 아마존 판매자들에게 적합한 보험회사를 선별·추천함⁶⁾
 - 예를 들면 중국에 기반을 둔 판매자는 Amazon Insurance Accelerator 참여 보험회사인 Huatai Property & Casualty Insurance Company Limited, Ping An P&C Insurance Company of China Ltd., PICC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등을 추천받고, 판매자 자신의 요구사항과 아마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보험상품을 찾아 가입할 수 있음
 - AI 기반의 인수어테크 기업인 Next Insurance는 Amazon Insurance Accelerator에 참여하여 판매자들이 가입하는 보험에 자동적으로 아마존을 추가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함으로써 해당 보험이 자동적으로 아마존 정책에 부합하도록 지원함⁷⁾

4) Amazon(2021. 8), "Expanding A-to-z Guarantee to protect customers and sellers (US)"

5) Insurance Business(2021. 8. 10), "Amazon Reveals Massive Insurance Partnership"

6) Marsh(2021), "Marsh Collaborates with Amazon to Support New Online Insurance Network for Sellers"

7) Reinsurance News(2021. 8. 11), "Insurtech NEXT Partners with Amazon on Third-party Seller Insurance Platform"

- 아마존의 Amazon Insurance Accelerator는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의 보험 판매 플랫폼이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보험회사를 단순 연결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내 판매자들의 보험 수요를 창출하고 이러한 수요를 자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흡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전통적 보험회사들은 현재 아마존의 Amazon Insurance Accelerator에 참여하며 협력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장차 플랫폼을 선점하고 고객데이터를 확보한 빅테크 기업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전통적 보험회사들이 단순히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단순 협력관계를 넘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호주 보험회사(NIB)의 약제비 결제에 대한 보험금 청구 자동화 서비스 출시

가. 호주 보험회사 NIB, 약국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보험금 청구 자동화 서비스 출시⁸⁾

- 2021년 8월 호주 보험회사인 NIB Group은 해당 보험가입자가 약국에서 약제비 결제 시 보험금 청구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솔루션을 도입함
 - 호주 건강 및 의료보험회사인 NIB Group(이하, 'NIB')이라 함은 결제 플랫폼인 LanternPay와 다국적 소프트웨어 회사인 Civica와 파트너십을 통해 약국에서 약제비 구입 시 자동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플랫폼을 개발함
 - NIB의 건강보험가입자는 LanternPay 보험금 청구 솔루션을 이용하여 약국에서 서면작업 없이 즉각적인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디지털을 활용한 동 보험금 청구 솔루션은 6주간의 시험기간을 거친 후 현재 호주의 약 1,300여 개 이상의 약국에서 사용가능함
- NIB이 출시한 약국에서 즉각 처리 가능한 보험금 청구 솔루션은 약국에서의 결제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별도로 분리하던 기존 관행을 개선시킨 기술임
 - 기존에 소비자는 처방전에 대한 금액을 약국에 선지급하고 이후 보험회사에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했으나, 신규 기술의 적용으로 인해 보험회사에 대한 별도의 보험금 청구 절차가 생략됨
 - 또한 약국은 클라우드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은행에 가입하지 않고도 보험금 청

8) <https://www.healthcareitnews.com/news/anz/health-insurer-nib-rolls-out-digital-claiming-platform-pharmacies>

9) NIB은 2017년 기준 호주 민간의료보험 시장에서 약 8.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인 약 140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 및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약 19만 명을 대상으로도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구 솔루션에 접속하여 보험금 청구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됨

- 이 같은 솔루션의 이용은 보험금 청구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경험의 향상과 보험료 감소라는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물적자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는 서면작업을 대신하기 때문에 환경보호 측면에서 유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보험금 청구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NIB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함

○ NIB은 현재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 자동화 서비스를 치과, 물리치료, 병리학 등의 분야로 확장할 계획임

- NIB은 디지털을 활용한 보험금 청구 자동화 시스템을 치과, 물리치료, 척추지압사¹⁰⁾(Chiropractor)와 같은 영역으로도 확장할 계획이며, 특히 병리학 분야에서는 보험금 청구의 약 70%를 자동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나. 호주 주요 건강보험회사, 애플월렛(Apple Wallet)을 통한 비접촉 방식의 보험금 청구 방식 허용¹¹⁾

○ 2021년 8월부터 호주의 주요 건강보험회사의 가입자는 애플월렛¹²⁾을 통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짐

- 호주의 주요 건강보험회사인 Medibank, Bupa, NIB 및 GU Health 가입자는 회원증(Membership card)을 애플월렛에 업로드하고 아이폰 혹은 애플워치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됨
 - 해당 건강보험회사의 가입자는 먼저 보험회사의 앱에서 디지털 회원증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활성화한 후 애플월렛에 업로드하면, 이후 아이폰과 애플페이를 통해 애플월렛에 장착된 회원증을 사용하여 HICAPS¹³⁾(건강보험금 청구 및 지불서비스) 단말기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10) 척추신경 압박으로 인한 신체의 이상을 치료하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부위를 지압하는 치료사를 말함

11) <https://www.nfcw.com/nfc-world/australian-health-insurers-let-customers-make-contactless-claims-from-apple-wallet/>

12) 애플월렛은 아이폰에 기본 탑재되어 있는 기능으로 일반적으로 애플페이나 여러 멤버십 카드 등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사용함. 애플월렛에 카드를 저장하고 애플페이를 사용하여 상점, 식당 등에서 비접촉식 결제를 진행할 수 있음

13) Health Industry Claims and Payments Service의 약자로 호주 건강보험기금(Health Insurance Fund; HIF) 회원이 의료서비스를 받은 장소에서 자동으로 보험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전자건강보험금 청구시스템임. 예를 들어 치과 또는 물리치료와 같은 일반적인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 기관을 방문한 경우, 접수원이 의료 청구서를 제시하며 건강보험 여부를 물어볼 때 환자가 HIF 회원카드를 제시하면 이들은 HICAPS 단말기를 통해 이를 처리함. 단말기를 통해 HIF 부담금이 자동으로 처리되며 나머지 자기부담금이 있을 경우 이를 결제처리함

- 기존에 소비자들은 실물카드를 직접 소지한 상태로 건강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했으나, 바뀐 규정으로 아이폰과 애플페이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작업의 수행이 가능하게 됨
 - 호주에서는 휴대폰과 스마트워치를 통해 식료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상품 구매가 가능하며 이러한 시스템이 건강보험금 청구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됨
 - 동 서비스는 현재 HICAPS 보험금 청구 및 결제 절차 서비스에 등록된 8만 9천 명 이상의 건강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소비자는 치료비용이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아이폰과 애플페이를 통해 자기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음
 - 치료비용이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서비스 제공기관이 HICAPS 단말기에서 보험금 청구 관련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 소비자는 이를 확인한 후 필요 시 차액(자기부담금)을 지불하게 됨

3. 프랑스 생명보험시장의 회복과 변액보험 및 퇴직연금 수요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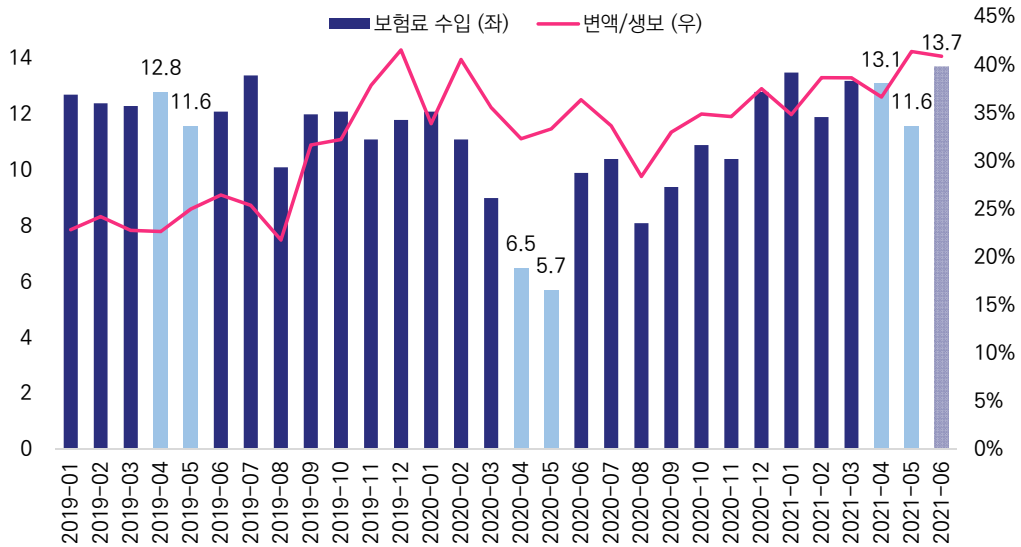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조치로 부진했던 프랑스 생명보험시장은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이며, 수익성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음
 - 프랑스 생명보험시장은 2020년 상반기 시작된 코로나19 방역 봉쇄조치로 인하여 판매채널이 침체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급감하였으나, 최근 들어 이를 완전히 회복한 모습을 보임¹⁴⁾(〈그림 1〉 참조)
 - 2021년 4월과 5월 보험료 수입은 각각 지난해 동월에 비하여 두 배 이상의 금액으로 2019년 수준을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6월 가장 높은 보험료 수입을 기록함
 - 프랑스 생명보험시장은 순유입액 기준으로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20년과 달리, 2021년에는 매월 10억 유로 이상의 순유입액을 꾸준히 기록하며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2〉 참조)
- 프랑스 생명보험시장에서 변액보험(Unit-linked insurance)은 기록적인 순유입액을 달성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생명보험 전체에서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생명보험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옴
 - 2021년 1월에서 4월까지의 변액보험 순유입액은 4개월치를 기준으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5월에는 5개월치를 기준으로, 6월에는 6개월치를 기준으로 기록을 경신함(〈그림 3〉 참조)

14) FFA(2021. 7. 1), "Life insurance: with €23.6 billion collected since January 2021, unit-linked contributions reached an all-time high over the first five months of the year"

- 2021년 1월에서 5월까지의 순유입액은 137억 유로, 1월에서 6월까지의 순유입액은 193억 유로로 모두 2007년 이후 최고 기록이며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도 최고 기록을 세움
- 그 결과 생명보험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변액보험의 보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평균 34%에서 증가하여 2021년 5월과 6월에는 모두 40% 이상을 기록함으로써 생명보험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옴(〈그림 1〉 참조)
- 총 운용자산 기준으로는 변액보험이 생명보험 전체에서 4분의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그림 1〉 프랑스 생명보험시장 보험료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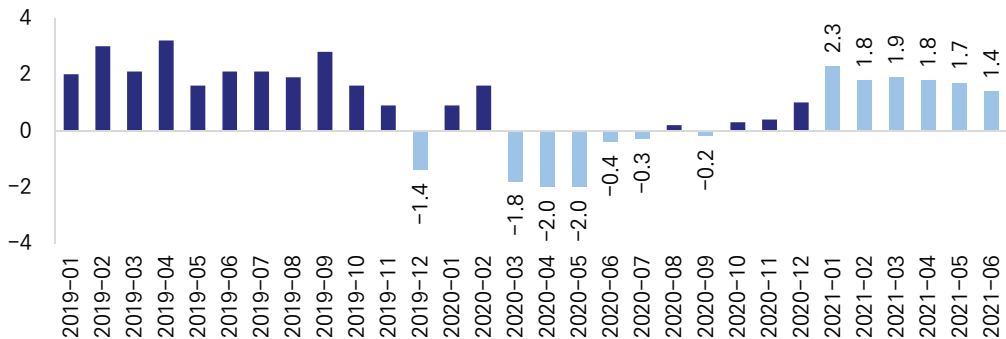
(단위: 10억 유로)



자료: FFA(2021. 7. 30), "Life insurance at end June 2021, Provisional estimates"

〈그림 2〉 프랑스 생명보험시장 순유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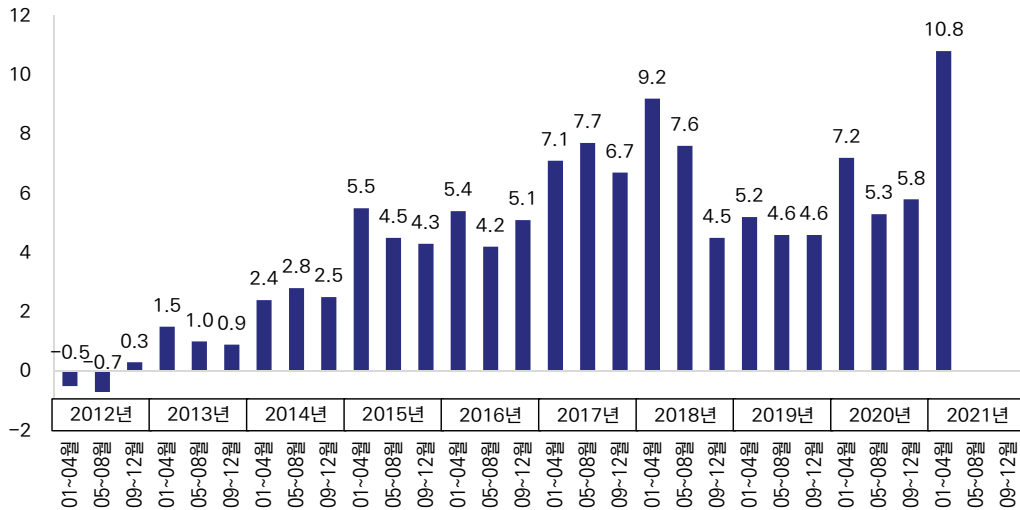
(단위: 10억 유로)



자료: FFA(2021. 7. 30), "Life insurance at end June 2021, Provisional estimates"

〈그림 3〉 프랑스 생명보험시장의 변액보험 순유입액

(단위: 10억 유로)



자료: FFA(2021. 5. 31), "Life insurance: net inflows in unit-linked products reached almost +€11 billion in the first four months of the year, a record level in over 14 years"

○ 또한 간소화를 특징으로 도입된 DC형 퇴직연금 PER(Plan Épargne Retraite)¹⁵⁾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순유입액을 기준으로 생명보험산업 전체의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됨¹⁶⁾

- PER은 퇴직연금상품의 단순화·표준화를 위한 퇴직연금 개혁(Pacte법)의 일환으로 2019년 10월에 도입된 확정기여형(DC형)상품으로, 기존의 복잡하고 경직된 퇴직연금상품들을 대체함¹⁷⁾
- PER의 순유입액은 2021년 상반기에만 이미 2020년 한 해 순유입액의 60%가 넘는 금액을 기록했으며, 퇴직연금의 보험료 납입이 하반기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PER의 급성장을 확인할 수 있음
- PER 순유입액은 2020년에 30억 유로였고,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지는 19억 유로임¹⁸⁾
- PER의 유입액은 2021년 5월 기준 10억 유로 이상으로 나타나며, 이 중 PER로 대체된 상품들로부터 이전되어 들어온 수입을 제외한 3억 8천 유로의 PER 보험료 수입은 지난해 동월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규모임
- 그 결과 2021년 5월 PER 순유입액은 프랑스 생명보험산업 전체의 순유입액의 3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함

15) PER의 영문명칭은 RSP(Retirement Savings Plan)임; WTW(2019. 10. 3), "France: Legislation brings significant changes for retirement savings plans"

16) FFA(2021. 5. 31), "Life insurance: net inflows in unit-linked products reached almost +€11 billion in the first four months of the year, a record level in over 14 years"

17) PERP, Madelin, PERCO, Article 83 상품 등이 PER로 대체되어 이 상품들의 기존 보유 계약들은 2020년 10월부터 이용이 불가능해지고 PER로 이전됨(<https://www.retraite.com/dossier-retraite/retraite-complementaire/per-plan-epargne-retraite/>)

18) FFA(2021. 7. 30), "With EUR 13.7 billion of contributions and EUR 3.4 billion of net unit-linked inflows, life insurance reached all-time highs in June 2021"

- 프랑스 보험협회(FFA)는 위와 같은 생명보험 산업구조의 변화는 고령화로 인한 퇴직연금 수요 증가와 지속되는 저금리 환경에 변액보험으로 수익률을 올리려는 소비자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함

4. 중국에서 사업 확장을 위한 AIA생명의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 지분 인수

- 2021년 6월 AIA생명은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의 지분을 인수한다고 발표하였고, 현재 이에 대한 중국 감독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¹⁹⁾
 - 중국에서 외국 보험회사로서 최초로 독자 생명보험회사를 설립한 AIA생명의 사업 확대를 위한 지분투자는 현재 많은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음
- 1992년 중국 정부는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내 보험영업을 허용했으며, AIA생명은 상하이에서 지사(Branch corporation)를 설립해 보험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 1992년 중국 정부는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을 대비하기 위해 상하이를 대외개방 시범도시로 선정했고, 1995년에 대외개방 시범도시를 광저우까지 확대함
 - 과거에 중국 상하이에서 보험을 영업했던 AIA생명은 외국 보험회사로서는 최초로 중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아 상하이에 지사를 설립해 영업을 시작함
 - AIA생명은 1919년에 중국 상하이에서 보험업을 시작했던 미국계 보험회사이며,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후 중국 본토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함
- 2002년 이후 중국에서 영업지역을 확대하지 못한 AIA생명은 중국 보험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차별적인 상품과 채널 전략을 추진함
 - 중국에서 보험을 영업하는 보험회사는 판매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만 보험을 판매할 수 있으며, AIA생명은 2002년까지 7개 지역에서 판매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판매허가를 받지 못함
 - AIA생명은 상하이, 광저우, 선전, 베이징, 장쑤, 둥관 및 장먼에서만 판매허가를 받았음
 - 저축성보험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중국 보험회사들과 달리 AIA생명은 중대질병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을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고객 필요에 따라 저축성보험, 의료서비스 및 자산관리서비스도 판매함
 - 이로 인해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의 총수입보험료가 AIA생명의 총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약 25%에서 2019년 약 60%까지 상승함

19) 财经网(2021. 7), “120亿增资两家保险巨头为何强强联手”

- 중국에서 최초로 설계사채널을 도입한 AIA생명은 설계사의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중국 보험회사들과 달리 설계사의 잦은 이동으로 발생한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설계사의 질적 성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함
 - 2010년 AIA생명은 마스터 플래너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마스터 플래너 가운데 백만 달러 원탁회의(MDRT)²⁰⁾에 가입한 설계사 수는 2011년 163명에서 2019년 2,577명까지 증가함
 - AIA생명의 설계사 수는 설계사 질적 성장 전략으로 2010년 2.4만 명에서 2013년 1.5만 명까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그 이후 2019년 4.4만 명 수준으로 회복됨
 - 2010년부터 총수입보험료 기준 설계사채널의 판매비중은 계속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2020년 1월 중국 정부는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내 독자 생명보험회사 설립을 허용했으며, 동년 6월 AIA생명은 최초로 외국 보험회사로서 독자 생명보험회사(AIA China)를 설립함

- 2018년부터 시작한 미·중 분쟁 속에서 중국 정부는 2018년 6월에 외국 보험회사의 생명보험회사 지분 소유 상한선을 50%에서 51%로 규제를 완화했으며, 2020년 1월에는 지분을 소유 규제를 완전히 폐지함
 - 이에 앞서 2003년 중국 정부는 외국 보험회사의 독자 손해보험회사 설립을 허용한 바 있음
- 지사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면 중국 보험회사들과 같은 감독을 받을 수 있어 사업 확대에 유리하므로 2020년 6월 AIA생명은 회사형태를 지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함
 - 중국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AIA생명은 2020년 11월에 쓰촨에서 판매 예비허가를 받았음

○ 2021년 6월 AIA생명은 중국 사업 확장을 위해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를 발표함

- 시장점유율 및 성장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우체국보험회사와 유사한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는 AIA생명에게 매우 매력적인 지분투자 대상임
 - 2020년 총수입보험료 기준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는 중국 생명보험시장 10위권에 진입했으며, 2016~2020년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전체 생명보험시장 평균 성장률(17.6%)보다 11.4% 높은 29.0%를 기록함
- 중국 감독당국이 AIA생명의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 지분투자를 승인할 경우 AIA생명은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 지분의 24.99%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될 것임
- 한편, 중국우정생명보험회사의 모회사인 중국우정그룹은 우체국과 은행을 경영하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방카슈랑스 영업을 강화하려는 AIA생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2010년 AIA생명은 방카슈랑스 영업 강화를 위해 중국공상은행과 장기 협력 계약을 체결했으나, 총 수입보험료 기준 방카슈랑스채널 판매비중은 과거 10년 동안 계속 10%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음

20) 백만 달러 원탁회의(Million Dollar Round Table; MDRT)는 1927년 미국에서 시작된 생명보험·재무 설계사들의 모임으로 전세계 70개국, 7만 2천여 명의 회원이 모인 전문가 단체임

- 중국우정그룹의 산하 우체국과 은행 자회사는 약 4만 개의 영업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AIA 생명은 중국우정그룹과 사업협력을 한다면 방카슈랑스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중국 사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을 고려할 때 AIA생명의 지분투자는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려는 외국 보험회사가 주목할 만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음

5. 최근 일본에서 개발한 주요 보험상품 현황

- 일본에서는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질병 조기발견 및 완치율이 증가하고, 고령화에 따른 간병비 부담이 증가하며, 4차산업 발전과 고용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기업의 새로운 보험니즈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최근 일본 보험회사들은 보험상품의 면책기간 중 계약자 보험료 면제, 재발 암 치료 보장, 건강시 환급형 간병 보장, 부모 간병으로 인한 소득감소 보장, 지적재산권 침해 보장, 제품 품질보증 등 개인과 기업의 새로운 니즈를 반영한 선진형 보험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있음
 - 이에 일본 보험회사가 2021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보험상품의 주요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함
- 손보히마와리생명은 암이 완치된 유병자가 신규로 보험가입 시 면책기간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유병자 암보험상품을 업계에서 처음 개발하여 2021년 10월부터 판매할 예정임²¹⁾
 - 일본에서 판매 중인 기존 암보험은 가입자 역선택 방지를 위하여 보험가입 직후의 암 사고를 보장하지 않도록 보험계약자 부담으로 일정기간 면책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대부분임
 - 동 상품은 암 진단 또는 치료비를 보장하는 암보험상품으로 보험가입 후 3개월 면책기간 동안의 위험보험료를 보험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므로 보험계약자가 3개월간 위험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면책기간이 종료된 4개월부터 정상적인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설계됨
 - 동 상품의 보험료는 비흡연 남성 50세 기준으로 월 5천 엔 수준이며, 이외에도 생활습관 개선 App과 가입자의 소변이나 타액으로 암 가능성을 예측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MICIM 소액단기보험²²⁾은 현재 암 치료 기간 중 향후 암 재발에 대비하여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상품을 업계 처음으로 개발하여 2021년 8월부터 판매함²³⁾

21) 日本經濟新聞(2021. 9. 4), “SOMPO系のがん保険、免責期間は無料”

22) 동 회사는 2018년 7월에 설립된 의료정보 스타트업 MICIN 자회사로 MICIN에 니혼생명, 후코쿠생명, 미츠비시상사 등이 출자하고, 후코쿠(富国)생명과 2021년 8월에 판매제휴를 맺은바 있음. MICIN의 주요 사업은 온라인 진료, 온라인 복약 지도, 임상개발형 디지털 솔루션 사업, 환자 생활지도 사업 등임

- 의료기술 발전으로 최근 암 환자의 생존율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암 환자의 보험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암 환자의 향후 암 재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 상품을 개발함
- 동 회사의 '재발암 보장보험'은 표준생명표와 환자 조사 통계를 사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일반적인 보장성상품과 달리 MICIM으로부터 입수한 암 발생 임상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함
- 동 상품은 20~69세 유방암 또는 자궁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암 환자 또는 암 완치자를 대상으로 한 1년 갱신형인 온라인 판매상품임
- 주요 보장은 암 재발 진단 시 80만 엔과 사망보험금, 고도장해보험금을 보장하며, 보험료는 최초 발생 암 세부종류, 현재 암 진행단계, 사망보장액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예컨대, 40~44세 여성이 유방 재발암 보험을 암 진단 시 80만 엔, 사망보험금 300만 엔으로 설계할 경우, 보험료는 림프절 전이가 없는 스테이지Ⅰ플랜이 월 4천 엔, 림프절 전이가 발생한 스테이지Ⅱ플랜의 A형이 1만 엔, B형이 1.8만 엔 임

○ 토쿄해상안심생명은 가입자의 간병비용 절감을 위하여 70세까지 건강할 경우, 납입한 간병보험료 전액을 환불하는 간병연금보험상품을 처음으로 개발하여 2021년 8월부터 판매함²⁴⁾

- 일반적인 간병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보험가입 기간 경과에 따라 소멸되는 구조로 개발됨
- 동 회사의 '안심연금개호R'은 연금 지급식 간병상품으로 피보험자가 70세까지 요개호 2등급 이하²⁵⁾로 판별되어 간병이 필요치 않을 경우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70세에 전액 환불하고, 70세 이후에도 저렴한 보험료로 간병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함
-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요개호 3등급 이상의 상태로 판정될 경우 급부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고, 납입한 보험료보다 연금적립금이 적을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연금적립금을 공제한 잔액을 70세에 지급함
- 예컨대 30세에 가입하여 65세에 요개호 3등급 이상으로 판정되어 70세까지 간병연금을 150만 엔 받을 경우 65세까지 납입한 보험료(189만 엔)에서 150만 엔을 공제한 39만 엔을 보험회사가 환급함
- 보험료는 30세 남성이 10년 동안 연간 30만 엔의 간병연금을 보장하는 경우, 월 보험료는 4,500엔으로 동일 조건의 70세 가입 시 보험료 월 6,900엔보다 저렴함

○ 토쿄해상은 부모 등 가족 간병을 위하여 근무시간 단축 시 감소한 소득을 보장하는 소득보상보험상품을 단체형으로 개발하여 2021년 1월부터 판매함²⁶⁾

- 일본 총무성에 의하면 일과 간병을 양립하는 인구는 346만 명으로 간병을 사유로 이직하는 직장인이

23) <https://products.micin-insurance.jp/>

24) 東京海上日動あんしん生命 News Release(2021. 5. 27)

25) 요개호(要介護)는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자로 건강상태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됨

26) 東京海上日動火災保険 News Release(2020. 1. 13)

연간 10만 명에 이르는 등 일과 간병 양립 문제가 일본에서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일본 육아·간병 휴업법은 고용보험에서 통상 93일간 휴업 급부금을 지급하지만 93일 초과 시 휴직과 단축근무로 인한 소득 감소를 고용보험이나 기업이 보장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판매 중인 기존의 소득보상보험은 가족 간병으로 인한 본인 휴업 시 소득 감소만을 보장하고 있음
- 동 회사의 '단체장기장해 소득보상보험'은 부모 등 가족 간병으로 인한 본인 휴업 또는 단축 근무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장하고, 면책기간 90일이 경과한 후 보장이 가능하도록 개발됨
- 예컨대 40세 남성이 월 830엔의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가입 후 90일간 면책기간을 거친 후 최대 월 20만 엔을 3년간 보장하고 있음
- 동 상품은 단체형상품으로 기업이 종업원 복지를 위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과 기업이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되 종업원이 자유의사로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의 두 가지 상품이 있음

○ 손보재팬은 고객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입힌 손해를 보장하는 '지적재산권 배상책임보험'을 업계 처음(영업손해 보장)으로 개발하여 2021년 4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함²⁷⁾

- 4차산업 발전에 따라 최근 지적재산에 대한 관심과 침해 소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수수료 등을 손해액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본 특허법이 2020년에 개정되었음
- 이에 손보재팬은 고객이 사업 추진 중에 본의 아니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입힌 상대방 기업의 손해와 고객의 사업 중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 상품을 개발함
- 일본에서 판매 중인 기존의 지적배상책임보험은 제3자가 고객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나 소송비용을 보장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동 상품은 고객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지적재산권 사용 중지 등에 따른 고객의 영업손해를 주로 보장함
- 대상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이고, 주요 보장은 재산권 침해로 인한 배상책임액, 변호사 상담 등 소송비용, 제품 사용 중지 등에 따른 영업손실, 판매 후 제품 회수 비용 등이며, 보험 적용지역은 전 세계임

○ 손보재팬은 의료기기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품질보증 기간이 종료된 치과병원 의료장비의 보증연장(Extended warranty) 상품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여 2021년 7월부터 판매함²⁸⁾

- 일반적인 의료기기의 경우 1회 수리비용이 50만 엔 이상 소요되는 고가 장비이므로 무상수리 제품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의료기기 수리비용에 대한 병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손보재팬은 의료기기의 통상 1년간 제품보증기간 종료 후 추가적으로 5년간 무상수리를 포함한 제품보증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의료기기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판매하기 시작함

27) 損害保険ジャパン News Release(2021. 4. 30)

28) 日本経済新聞(2021. 7. 15), “損保ジャパン、歯科機器に保証サービ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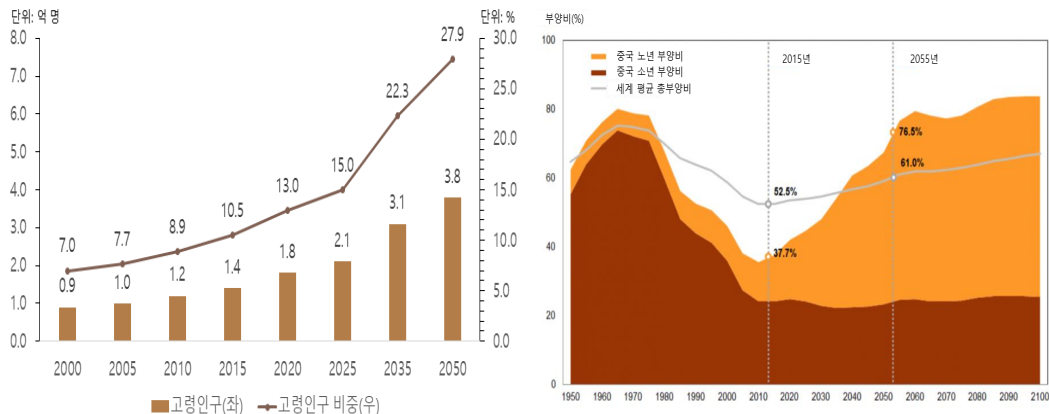
- 동 상품은 의료기기 제조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료 부담을 하고, 치과병원에서 의료기기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할 경우 손보재팬이 의료기기 제조회사 등에게 고장수리를 위탁하여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프로세스임
- 가입 대상 기기는 치과 치료장비인 유니트체어, X선 장비, CAD-CAM(틀니 등 컴퓨터 설계·제조 장치) 등이며, 손보재팬은 약 200개사 이상의 의료기기 제조회사 회원을 보유한 야하타(八幡)기업과 판매제휴를 체결함
- 향후 동 회사는 동 서비스 제공 경험을 기반으로 다른 의료기기로 보증 서비스 제공을 확장할 계획임

1. 중국 고령화 현상

○ 중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22년 고령사회에 도달하고, 2030년경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¹⁾

-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억 단위의 고령인구를 보유한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현재 1.8억 명을 넘었으며 2030년 2.3억 명, 2050년 3.8억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특히 고령인구 중 독거노인은 2020년 현재 2,540만 명을 넘었으며 2030년 3,722만 명, 2050년 5,31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1980~2015년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총부양비²⁾도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년 부양비 상승으로 2015년 52.5%에서 2050년 76.5%까지 증가해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1〉 중국 고령인구 및 총부양비 변화 추이



자료: 中国发展基金会, “中国发展报告2020”

자료: 联合国儿童基金会, “人口抚养比”, 1950-2100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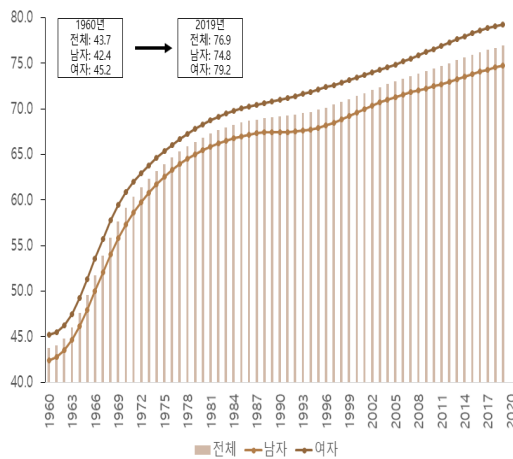
1) 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해당 국가를 고령화사회로 분류하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까지 올라가면 해당 국가를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음

2) 총부양비는 생산가능(15~64세) 인구 대비 소년(0~14세)과 노년(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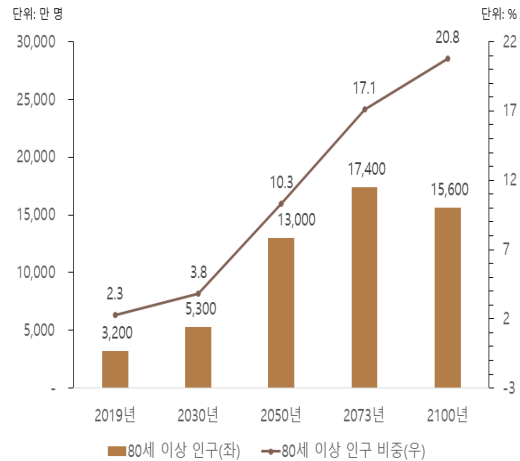
○ 중국은 1960년 이후 약 60년이 지난 2019년에 평균수명이 남녀 각각 32.4세, 34.0세 증가하고, 평균수명 8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평균수명의 경우 남성은 1960년 42.4세에서 2019년 74.8세로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1960년 45.2세에서 2019년 79.2세로 증가함
- 중국의 80세 이상 인구는 2019년 3,200만 명을 기록했으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2050년 1.3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중국 평균수명 및 80세 이상 인구 변화 추이



자료: 世界銀行, “出生時の预期寿命”



자료: 任泽平, “任泽平谈中国人口报告”

2. 만성질환, 노후소득 및 간호서비스 문제

○ 중국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유병기간이 증가하고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임

- 중국인 평균수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유병기간은 2000년 7년에서 2019년에는 8년으로 증가함
 - 유병기간은 2000년 남성 6.9년에서 2019년 7.6년으로 증가했으며, 여성의 경우도 8.5년에서 9.2년으로 증가함
- 빈혈성 심장병,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 뇌혈관 질환과 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60세 이상 인구 수는 2020년 8,510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에는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중국은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노후생활 기간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있음

- 중국에서 현재 법적 정년연령은 남성은 60세, 여성은 50세³⁾로 정해져 있으며, 평균 노후생활 기간은 2019년 기준 남성 15년, 여성 29년에서 2050년 남성 25년, 여성 35년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비해 중국의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은 2019년 기준 9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소득대체율이 낮아 국민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중국의 공적연금은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및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으로 구성되며, 2020년 기준 가입자 수는 9.99억 명을 기록함
 -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중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의 소득대체율은 41%에 불과함
- 중국의 국민연금기금은 제도개선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고령화 심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2035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중국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 증가로 간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간호 인력 및 양로시설 부족으로 간호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60세 이상 인구 중 치매인구가 2003년 500만 명에서 2018년 1,507만 명까지 증가했으며 2030년 2,220만 명, 2050년 2,898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⁴⁾
- 치매인구를 포함한 생활능력이 부분 또는 완전히 없는 실능(失能)인구(4,060만 명, 2017년 기준)의 보살핌에 약 1,000만 명의 전문 간호사가 필요하지만, 2020년 전문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만 명에 불과함⁵⁾
- 요양시설의 병상 수는 2011년 353만 개에서 2020년 808만 개까지 증가하였으나, 요양시설의 수요를 감안할 때 병상 부족 수는 2016년 770만 개에서 2018년 914만 개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됨⁶⁾

3. 중국 정부의 인구고령화 대응

○ 중국 정부는 인구고령화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로서비스업 발전에 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함

3) 간부의 경우 55세임

4) 中国老龄科学研究中心社会保障与产业研究室(2005), “我国老年慢性病现状及发展趋势报告”; 中国老龄协会(2021. 5), “认知症老年人照护服务现状与发展报告”

5) 新华网(2018. 4), “谁来照护2.4亿中国老人?”; 央广网(2020. 11), “我国养老护理员缺口已达上百万 民政部独家回应：如何解决养老护理员职业发展瓶颈?”

6) 新华社(2020. 12), “我国各类养老床位数达到807.5万张”; 前瞻产业研究院(2018. 1), “2018养老院行业现状与前景”

- 2013년 국무원은 양로서비스업 발전 가속화를 위해 2020년까지 재택 양로를 기초로 하고 거주 지역 양로와 시설 양로를 보조로 하는 양로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함
 - 구체적으로 국무원은 양로서비스 체계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조달, 토지 공급, 세수, 재정지원, 인력양성 등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함
- 2015년 민정부는 민영자본의 양로서비스 참여 장려를 위해 민영자본에 자금조달, 세제지원, 인력양성, 토지 공급 등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공포함
- 2016년 국무원은 양로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양로서비스시장 전면개방, 재택과 거주 지역 양로서비스 품질 개선, 양로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정책적 지원 강화 등을 천명하였음
 - 양로서비스시장의 전면개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시장진입 조건 완화, 시장환경 개선 등이 있으며, 재택과 거주 지역 양로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양로서비스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 농촌의 양로서비스 능력 제고, 노인 편의시설 개조 등의 대책을 제시함
 - 양로서비스 공급체계 개선은 '인터넷+' 양로서비스 혁신, 의료서비스와 양로를 결합한 그린서비스 개발, 노인용품 품질 제고 및 개발, 노인 편의를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있으며, 정책적 지원은 토지 공급, 양로서비스 인력 교육, 재정지원 및 융자 등이 있음
- 2017년 공업정보화부는 스마트 건강 양로산업 발전을 위해 핵심 기술 및 제품 개발, 스마트 건강 양로서비스 보급,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스마트 건강 양로서비스 표준 확립 등을 주력사업으로 선정함
 - 이를 위해 공업정보화부는 2020년까지 100개 스마트 건강 양로서비스 회사, 500개 스마트 건강 양로 거주 지역, 100개 스마트 건강 양로단지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함
- 2017년 재정부는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모델의 활용을 통한 양로시설, 거주 지역 양로서비스 네트워크, 양로기관과 의료위생기관, 건강서비스기관의 발전 방안을 발표함
- 2019년 국무원은 양로서비스 발전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 자금조달 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양로서비스 소비 확대, 인프라시설 개선 등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양로서비스 감독제도 도입, 공립 양로기관 개혁, 양로서비스 세제 부담 완화, 양로기관의 대형화 발전, 양로서비스 정보공개 등이 있음
 - 자금조달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양로기관의 자금조달 방법 다양화, 회사채 발행 규모 확대, 외국자본에 대한 내국민 대우 제공이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방안은 간호사 인정 제도 및 교육제도 개선 등이 있음
 - 인프라시설 개선방안은 경로원 개조, 노인 거주 지역의 편의시설 개조, 양로시설 토지 공급 등임
- 2019년 국무원은 양로 및 가사 서비스업 발전 추진을 위해 세제혜택 지원방안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거주 지역 내 양로 및 가사 서비스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소득세의 10%를 차감할 것이라 밝힘

〈표 1〉 중국 정부의 양로서비스업 발전의 지원정책

구분	발표부처	지원정책	주요내용
2013	국무원	양로서비스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发展养老服务业的若干意见)	2020년까지 재택 양로를 기초로 하고 거주 지역 양로와 시설 양로를 보조로 하는 양로서비스 체계를 구축
2015	민정부	민간자본의 양로서비스 발전 참여 장려에 관한 실시의견(关于鼓励民间资本参与养老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	민영자본의 양로서비스업 발전 참여를 위해 자금조달, 세제지원, 인력양성, 토지 공급
2016	국무원	양로서비스시장 전면 개방을 통해 양로서비스 품질 제고에 관한 의견(关于全面放开养老服务市场提升养老服务质量的若干意见)	시장진입 조건 완화, 시장환경 개선과 같은 양로서비스시장 전면 개방; 양로서비스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 농촌의 양로서비스 능력 강화, 노인 편의시설 개조 등과 같은 재택과 거주 지역 양로서비스 품질 제고; ‘인터넷+’ 양로서비스 혁신, 의료와 양로서비스를 결합한 그린서비스 개발, 노인용품 품질 제고 및 개발, 노인 편의를 위해 금융서비스 제공과 같은 양로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토지 공급, 양로서비스 인력 교육, 재정지원 및 용자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
2017	공업 정보화부	스마트 건강 양로산업 발전 행동 계획(2017~2020년)(智慧健康养老产业发展行动计划(2017~2020年)的通知)	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 스마트 건강 양로서비스 보급,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스마트 건강 양로서비스 표준 확립 등 사업을 선정
2017	재정부	양로서비스업 발전에 관한 정부 및 사회자본 협력모델의 활용에 관한 실시의견(关于运用政府和社会资本合作模式支持养老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	양로시설, 거주 지역 양로서비스 네트워크, 양로기관과 의료위생기관, 건강서비스 기관의 발전을 장려; 세수감면, 재정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다양한 자금공급 등과 같은 지원정책을 제공
2019	국무원	양로서비스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推进养老服务发展的意见)	양로서비스 감독제도 도입, 공립 양로기관 개혁, 양로서비스 세제 부담 완화, 양로기관의 대형화 발전, 양로서비스 정보공개 등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 제시; 양로기관의 자금조달 방법 다양화, 회사채 발행 규모 확대, 외국자본에 내국민 대우 제공과 같은 자금조달 규제 완화; 간호사 인정 제도 및 교육제도 개선 등과 같은 일자리 창출; 경로원 개조, 노인 거주지역의 편의시설 개조, 양로시설 토지 공급 등과 같은 인프라시설을 개선
2019	국무원	거주 지역 양로 및 가사 서비스업 발전 촉진에 관한 조치(进一步促进社区养老和家庭服务业加快发展的措施)	2025년까지 거주 지역 내 양로 및 가사 서비스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소득세의 10%를 차감

자료: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함

○ 중국 정부는 건전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추진함

- 중국은 한국처럼 3층 구조의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에 있어서 1층의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2층의 퇴직연금과 3층의 개인연금의 기금 규모는 작음⁷⁾
 - 국민연금은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및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으로 구성되며, 2020년 기준 기금 규모는 6.1조 위안임
 - 퇴직연금은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기업연금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입된 직업연금으로 구성되며, 2020년 기준 기금 규모는 2.1조 위안임
 - 개인연금은 주로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연금보험을 포함하며, 2020년 기준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연금보험 규모는 각각 4.3억 위안, 5,800억 위안에 불과함
- 중국 정부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통합운영과 보충재원 확보 및 자산운용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발표함
 - 이에 따라 2007년 성(省)급 이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은 성급 지방정부가 운영하도록 변경되었으며, 2021월 1월에는 29개 성의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의 통합운영체계가 완성됨
 - 또한 2017년 기본양로보험의 재원 확충을 위해 국영기업의 일부 지분을 보충재원인 사회보장기금으로 편입하기 시작하여 2020년 말까지 93개 국영기업이 1.68조 위안에 상당하는 지분을 동 기금으로 편입함
 - 중국 정부는 2015년 기본양로보험기금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양로보험기금의 위탁투자 시행, 투자 대상 확대를 포함한 자산운용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6월까지 1.25조 위안의 기금을 위탁운용회사에게 위임함
- 중국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과 충분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일련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도 발표함
 - 2013년 기업연금 가입자에 대한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연금과 직업연금에 대해 연금수령 시 과세방식(EET)⁸⁾을 채택함
 - 2017년 기업연금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방식을 비강제가입에서 자동가입⁹⁾으로 전환함
 - 2018년 세제적 개인연금 판매를 허용하였으며, 개인연금의 투자범위를 중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해외 투자자산까지 확대함
 - 2018년 특정 지역에서만 판매됐던 주택담보연금을 전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함

7) 보험연구원(2021. 4), 「중국 개인연금시장 동향」, 『해외보험동향』

8) EET방식의 과세체계는 납입단계에서 보험료 납입액에 소득공제를 허용하고(Exempt),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Exempt)를 하며, 수급단계에서는 축적된 연금 적립금에 대해 과세(Taxed)하는 방식을 의미함

9) 자동가입은 신입직원이 입사 시부터 기업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후에 탈퇴가 허용되고 있음

- 2020년 퇴직연금의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주식 투자한도를 기존의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투자범위를 중국 본토 주식시장에서 홍콩 주식시장에까지 확대함
- 2021년 개인연금 다양화를 위해 노후보장형 연금보험의 시범판매를 허용함

〈표 2〉 중국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활성화 방안

구분	발표부처	제도개선 또는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	2007	인력자원사회 보장부 직장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의 성급 통합관리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 推进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省级 统筹有关问题的通知)	성급 이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도시근 로자 기본양로보험을 성급 지방정부가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의 추진
	2015	국무원 기본양로보험기금 투자관리방법 (基本养老保险基金投资管理办法)	기본양로보험 관련 위탁인, 수탁기관, 위 탁관리기관, 투자관리기관, 기본양로보 험기금의 투자, 보고제도, 감독 등의 내 용을 명시; 투자 부분에서 기본양로보험 기금의 위탁투자 시행, 투자대상 확대를 제시
	2017	국무원 일부 국유자본의 사회보장기금 편입 의 실시방안(划转部分国有资本充实 社保基金实施方案)	중앙, 지방 국유 대형 기업, 금융회사의 일부 지분을 보충재원인 사회보장기금에 편입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2013	재정부 기업연금, 직업연금 개인소득세 문제 에 관한 통지(关于企业年金职业年 金个人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	기업연금과 직업연금에 대해 연금수령 시 과세방식(EET)을 채택
	2017	인력자원사회 보장부 기업연금방법(企业年金办法)	기업연금의 가입방식 변경, 납입 보험료 인하, 적립금 귀속 방법, 수령방식 다양 화 등의 내용을 명시; 가입방식에서 비강 제가입을 자동가입으로 변경
	2018	국무원 개인연금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 (关于加快发展商业养老保险的若 干意见)	세제적격 개인연금 판매를 허용했으며 개인연금의 투자범위를 중대 인프라 건 설 프로젝트, 해외 투자자산까지 확대
	2018	은행보험감독 관리위원회 노인의 주택담보 양로보험 판매 확 대에 관한 통지(关于扩大老年人住房 反向抵押养老保险开展范围的通知)	특정 지역에서만 판매됐던 주택담보연금 을 전국으로 확대
	2020	인력자원사회 보장부 연금기금 투자범위 조정에 관한 통지 (关于调整年金基金投资范围的通知)	연금기금의 투자한도를 기존의 30%에서 40%로 상향조정했으며, 투자범위를 중 국 주식시장에서 홍콩 주식시장까지 확대
	2021	은행보험감독 관리위원회 노후보장형 연금보험 시범판매에 관한 통지(关于开展专属商业养老 保险试点的通知)	저장성, 충칭시에서 노후보장형 연금보 험을 시범 판매

자료: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함

○ 중국 정부는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정착을 추진하고 있음¹⁰⁾

- 기존 15개 도시와 2개 성에서만 도입되었던 장기요양보험을 2020년 29개 도시와 2개 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함
 - 이번의 시범 시행기간은 2년이며, 예상 가입자 수는 약 1.2억 명임
-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적 건강보험기금의 재원을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로 사용하기로 함
- 동 제도는 장기요양보험이 인정하는 간호서비스 비용만을 보장하며, 장기요양보험 총 지급한도는 장기요양보험기금의 70%로 설정됨

○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고령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령자의 금융서비스 개선을 권고하고 금융사기 주의보를 발령함

- 2021년 3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고령금융소비자의 디지털 소외문제 해소를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의 노인 스마트기술 이용 어려움 해결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¹¹⁾
 - 동 통지 내용은 전통 금융서비스방식 유지 및 개선, 고령자를 위한 인터넷 금융서비스 편의성 제고 및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개선, 금융서비스에 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정보보안 강화 등을 포함함
- 또한 6월에는 허위 금융투자상품, 주택담보연금 등 불법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고령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기주의보를 발령함¹²⁾
 - 동 주의보는 소비자에게 중국인민생명보험회사 및 행복생명보험회사만이 중국에서 주택담보연금의 판매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킴

10) 中国国家医疗保障局(2020. 9), “关于扩大长期护理保险制度试点的指导意见”

11)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1. 3), “中国银保监会办公厅关于银行保险机构切实解决老年人运用智能技术困难的通知”

12)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1. 6), “关于警惕“投资养老”“以房养老”金融诈骗的风险提示”

4. 중국 보험산업의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

가. 보험상품

- 중국 보험회사들은 정부의 연금보험 다양화 정책에 따라 주택담보연금, 노후보장형 연금을 출시함
 - 2015년 행복생명보험회사는 주택담보연금의 판매를 시작했으나 2020년까지 가입자 수가 187명에 불과해 판매실적은 미미한 상황임¹³⁾
 - 2021년 5월 중국인민생명보험회사, 중국인수생명보험회사, 중국태평생명보험회사, 중국태평양생명보험회사, 태강생명보험회사, 신화생명보험회사는 노후보장형 연금보험 판매 자격을 취득했으며 중국인민생명보험회사, 태강생명보험회사는 8월에 노후보장형 연금보험을 출시함¹⁴⁾
- 2019년 중국 보험회사들은 60~80세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이 작고 보상금액이 높은 ‘백만의료보험’을 출시함
 - 2019년에 발표된 ‘양로서비스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은 양로서비스 소비 확대를 위해 보험회사의 고령자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를 장려함
 - 안심생명보험회사는 60~80세 보험소비자가 가입 가능한 ‘백만의료보험’을 최초로 출시¹⁵⁾한 보험회사임
 - 동 보험상품의 가입 나이는 60~80세이며, 갱신 시 가입자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음
 - 2021년 1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단기건강보험에 관한 소비자 민원 증가로 ‘단기건강보험업 무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이로 인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갱신 보장 약관이 포함되지 않는 일부의 ‘백만의료보험’은 2021년 4월부터 판매가 중단됨¹⁶⁾

13) 新京报(2021. 3), “试点六年, 参保不足200人, 保险版“以房养老”为何进展缓慢?”

14) 每日经济新闻(2021. 8), “首批试点单位专属养老保险陆续上市”

15) 千龙网(2019. 4), “国内首款60-80岁老年医疗险问世 水滴保破局中国式养老服务”

16) 羊城晚报(2021. 5), “大限将至 不规范短期健康险陆续下架”

〈표 3〉 일부 중국 보험회사들의 ‘백만의료보험’

구분		안심생명보험회사	중화생명보험회사	중혜상호보험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회사
보험상품		수디노년의료보험	중화연합중노년의료보험	혜향e생	알리안츠진애
가입 조건	가입 나이	61~80세 (갱신 시 100세까지)	51~80세 (갱신 시 100세까지)	30일~70세 (갱신 시 100세까지)	30일~65세
	보장 기간	1년	1년	1년	1년
	면책 기간	90일	90일	90일	30일
보장내용		1) 입원비: 100가지 질병(자기부담금 2만 위안), 200만 위안의 연간보상금을 지급 2) 외래진료비 100% 지급: 악성종양 화학 치료, 면역 요법 등 3) 무료 건강검진	1) 입원비: 25가지 질병(자기부담금 1만 위안), 200만 위안의 연간보상금을 지급 2) 외래진료비 100% 지급: 악성종양 화학 치료, 면역 요법 등 3) 무료 건강검진	1) 일반의료보험금: 300만 위안까지 지급 2) 중대질병 의료비: 300만 위안까지 지급	1) 일반의료보험금: 300만 위안 (자기부담금 1만 위안) 2) 100가지 중대질병 의료비: 300만 위안 3)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 1만 위안
갱신 시 심사 필요 여부		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보험료		71~75세 2,988위안	71~75세 3,988위안	61~65세 1,600위안 (자기부담금 2만 위안)/ 2,119위안	61~65세 2,706위안
		76~80세 3,988위안	76~80세 4,988위안	(자기부담금 1만 위안)	

자료: 중국 보험회사들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함

나. 실버타운 사업

○ 중국 보험회사들은 실버타운 건설이나 사업 협력 방식을 통해 실버타운 사업에 진출해 왔음

- 양로서비스업에 진출하는 일부 보험회사들은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

○ 보험회사의 실버타운 사업 진출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07~2012년은 모색단계로, 2012~2015년은 시작단계로, 2015년~현재는 발전단계로 볼 수 있음

- 모색단계(2007. 3~2012. 5): 태강생명보험회사, 합중생명보험회사 등은 미국, 일본의 실버타운 사업 모델 및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실버타운 사업방식을 결정함

- 미국의 은퇴자 주거단지(CCRC)¹⁷⁾의 방식으로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정함
- 시작단계(2012. 6~2015. 5): 태강생명보험회사 및 합중생명보험회사는 실버타운 건설을 완료하였거나 시작했으며, 신화생명보험회사, 평안생명보험회사, 태평생명보험회사도 실버타운 사업에 진출함
- 발전단계(2015. 6~현재): 태강생명보험회사는 실버타운 건설을 확대하고 합중생명보험회사는 인수를 통해 실버타운을 확보했으며, 중국인수생명보험회사도 실버타운 사업에 진출함
- 신화생명보험회사, 평안생명보험회사, 태평생명보험회사도 실버타운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9월까지 총 10개 보험회사가 47개 실버타운 건설을 추진했거나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업체와 사업협력을 체결했으며 총 8만 4,155개 병상을 확보함
- 또한 보험회사들은 양로서비스 및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사모펀드에 2,348억 위안을 투자함

〈표 4〉 일부 중국 보험회사들의 실버타운 사업 현황

회사	브랜드	시작시기	구축방식	진행 상황
태강생명보험회사	태강의집	2012	직접 건설	22개 도시에서 실버타운과 재활병원 건설 계획을 세웠으며 베이징, 상하이, 청두, 쑤저우, 우한, 항저우에서 실버타운과 재활병원 운영을 시작
신화생명보험회사	신화가원	2012	직접 건설	베이징, 하이난에서 실버타운 운영을 시작했으며 베이징에서 추가 실버타운 개업을 준비 중
합중생명보험회사	합중우년	2013	직접 건설+사업협력	우한, 선양, 난닝에서 실버타운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7년부터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업체와 협력해 현재 12개 도시에 협력 실버타운을 확보
중국태평생명보험회사	태평락향의집	2014	직접 건설+사업협력	상하이에서 실버타운을 건설했으며 2017년부터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업체와 협력해 현재 3개 도시에 협력 실버타운을 확보
중국인수생명보험회사	국수가원	2015	직접 건설	리조트형 실버타운 4개를 건설했으며, 지역주거형 노인 보호센터를 건설
중국태평양생명보험회사	태평양가원	2018	직접 건설	창강 삼각주 지역, 대만주 지역, 환발해 지역, 청두와 칭칭, 중부 지역에서 14개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청두, 다리, 항저우, 상하이, 샤먼, 난징, 푸투에서 실버타운 건설을 시작

자료: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17) 미국의 은퇴자 주거단지(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CCRC)는 대단지내 주거·의료·돌봄·여가 시설을 한데 모은 은퇴자 거주공간을 의미함

1) 태강생명보험회사

○ 2009년 태강생명보험회사는 실버타운 투자자격을 취득했으며 ‘태강의집’이라는 실버타운 건설을 시작함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쑤저우, 청두, 우한, 항저우, 난창, 샤먼, 장샤, 난닝, 닝보, 허베이, 선전, 충칭, 난징, 정저우, 칭다오, 푸저우, 원저우 총 22개 도시에서 실버타운을 건설함
 - 또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쑤저우, 우한, 항저우 등의 도시에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활병원을 건설함
- 2020년 말 기준으로 ‘태강의집’은 3.9만 세대의 노인 아파트, 1,600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음

〈표 5〉 태강생명보험회사의 ‘태강의집’ 발전 과정

시기	사건	내용
2008	CCRC 건설 결정	미국 은퇴자의 생활방식 및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여 대규모, 다기능, 고품질 은퇴자 주거단지(CCRC) 건설을 결정
2009	투자자격 취득	보험회사 중 최초로 실버타운 투자자격을 취득
2010	‘태강의집’ 설립	최초의 실버타운 투자회사인 ‘태강의집’을 설립
2012	‘행복의약속’ 출시	실버타운과 결합한 연금보험인 ‘행복의약속’을 출시
2013	의료와 양로 결합서비스 제공	미국 재활서비스업체인 GRS와 협력해 고품질 재활서비스를 제공

자료: ‘태강의집’ 홈페이지(<https://www.taikangzhijia.com/>)

○ ‘태강의집’의 입주 대상자는 고소득층 소비자¹⁸⁾로 설정되었으며, 입주 방식은 직접신청 및 ‘행복의약속’의 가입으로 이루어짐

- 입주 자격을 취득하려는 비보험고객은 60만 위안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매월 6,400위안의 월세 및 식비를 내야 함
- 보험료가 200만 위안 이상의 ‘행복의약속’ 가입자는 자동으로 입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입주 후 보증금이 필요 없고 이용비용만을 납입하면 됨
 - ‘행복의약속’ 만기 시 가입자는 연금이나 일시금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

18) 중국의 고소득층 소비자는 600만 위안 이상 순자산을 보유하는 소비자를 의미함

○ ‘태강의집’은 입주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독립생활, 협조생활, 재활간호, 전문간호의 4가지 간호서비스를 제공함

- 집사, 의사, 약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트레이닝 지도자 등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간호팀을 구축하여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함
 - 이를 위해 미국 재활서비스 업체인 GRS와 협력해 고품질 재활서비스를 제공함
- 한편, 태강생명보험회사는 ‘락태학원’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입주자에게 신체 및 정신 건강 제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풍부한 노후생활을 제공함

〈표 6〉 ‘태강의집’의 간호서비스

유형	특징	서비스 내용
독립생활	독립생활 능력이 있는 고령자	독립생활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긴급구호, 만성질환 관리, 문화 오락 활동, 운동, 식단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
협조생활	기본적인 독립생활을 선호하는 고령자	사위, 착의, 약품 복용 등 일상생활에 대한 협조서비스를 제공
전문간호	장기간호 및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자	고령자의 독립생활 능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간호팀, 재활팀, 의료팀이 함께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
재활간호	기억력 상실 장애가 있는 고령자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뇌 건강 관리와 증진 관련 서비스를 제공

자료: ‘태강의집’ 홈페이지(<https://www.taikangzhijia.com/>)

2) 태평생명보험회사

○ 2015년 태평생명보험회사는 보리부동산과 함께 상하이에서 ‘오동의집’이라는 실버타운 건설을 시작함

- 2016년 태평생명보험회사는 미국 Watermark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오동의집’을 직접 관리함
 - ‘오동의집’은 1,500여 세대의 노인 아파트, 900개 재활간호 병상, 3,600여 개 일반 병상을 보유하고 있음
- 2017년 태평생명보험회사는 제3자 실버타운 운영업체와 협력해 베이징, 다렌, 닝보, 쿤밍에서 ‘락향의 집’을 출시했으며 앞으로 16개 도시에서 ‘락향의집’을 출시할 예정임
 - ‘락향의집’은 ‘오동의집’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됨
- 한편, 2016년 태평생명보험회사는 건강서비스업 진출을 위해 일방그룹과 함께 8억 위안 규모의 건강 서비스업 투자펀드를 조성함

〈표 7〉 태평생명보험회사의 ‘오동의집’ 발전 과정

시기	사건	내용
2015	전략협력	보리부동산과 협력해 건강 및 양로서비스 사업을 추진
2016	합작회사 설립	미국 Watermark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오동의집’을 직접 관리
2016	투자펀드 조성	일방그룹과 건강서비스 투자펀드를 조성
2017	전략협력	일영후정보기술회사와 협력해 양로서비스 스마트 운영시스템을 구축
2018	고객체험관 개설	현장 고객체험관과 함께 마케팅을 위해 클라우드 플랫폼을 출시

자료: ‘태평의집’ 홈페이지(<http://life.cntaiping.com/info-hlwbxcpxx/>)

○ ‘오동의집’의 입주 대상자는 고소득층 소비자로 설정되었으며, 입주 방식은 직접신청 및 ‘복향금생’의 가입으로 이루어짐

- 입주 자격을 취득하려는 비보험고객은 아파트 유형에 따라 입주비용을 납부하면 됨
- ‘복향금생’ 가입자는 월납보험료가 1만 1,112위안 이상, 15년납의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입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표 8〉 태평생명보험회사의 ‘복향금생’

구분	항목	세부 내용
특징	장기보장	15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88세까지 장기보장을 받을 수 있음
	복리이자	생존보험금을 복리금리로 이자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인출 가능
	자금증식	보험계약이 5년 이상 유지 시 연 단위로 보험금 수령 가능
	장애보험금	피보험자가 완전 장애가 될 경우 특별생존금, 일반생존금 및 양로생존금을 받을 수 있음
보장 범위	특별생존금	보험계약이 5년 이상 유지 시 납입보험료의 20%를 지급
	일반생존금	6~59세에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
	양로생존금	60~69세에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40%를 지급하고 80~88세에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80%를 지급
	장애보험금	피보험자가 완전 장애가 될 경우 특별생존금, 일반생존금 및 양로생존금을 받을 수 있음
	축하금	88세까지 생존 시 납입보험료를 지급
	사망보험금	납입보험료 및 적립보험금 중 금액이 큰 금액을 지급

자료: 태평생명보험회사 홈페이지(<http://life.cntaiping.com/info-hlwbxcpxx/>)

〈표 9〉 태평양생명보험회사의 ‘오동의집’ 입주 가격

구분	A	B	C	D	E
아파트 유형	방 1	방 1, 거실 2	방 2, 거실 1	방 2, 거실 2	방 3, 거실 2
세대 수	274	504	500	262	32
면적(제곱미터)	30.85	58.65	64.4	92.5	111.7
사용비용(위안/월)	3,500	6,500	7,500	8,500	16,500
매일 이용비용(위안)	115	214	247	280	543
서비스비용(1인/위안/월)	5,300	7,800	9,033	14,000	-
서비스비용(2인/위안/월)	7,300	9,800	11,033	16,000	-

자료: 태평양생명보험회사 홈페이지(<https://www.chuxin365.com/i/taiping-wutong-international-health-care-community/#detail-info>)

3) 태평양생명보험회사

- 태평양생명보험회사는 실버타운 사업 시작이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실버타운 사업에 진출할 때 ‘보험 상품+실버타운+양로서비스’의 방식을 선택함
 - 2018년 태평양생명보험회사는 청두, 다리, 우한, 난징, 항저우, 샤먼, 상하이에서 8개 실버타운 건설을 시작했으며 7,500개 아파트, 1.1만 개 병상을 확보함
 - 향후 3~5년 동안 6개 실버타운을 건설하고 8,000~10,000개 아파트, 10,000~12,000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임
 - 태평양생명보험회사가 건설하는 실버타운은 리조트형 실버타운, 근교형 실버타운, 시내형 실버타운까지 포함하고 있음
 - 리조트형, 근교형, 시내형 실버타운의 주요 타깃 고객은 각각 55~69세 노인, 70~79세 노인, 80세 이상 노인임
- 태평양생명보험회사는 실버타운 입주자를 포함한 보험고객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병원을 설립함
 - 2021년 서금병원, 세쿼이아캐피탈차이나펀드사와 함께 오프라인 병원을 기반으로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문진, 자문, 진료, 전자처방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병원을 설립함
- 태평양생명보험회사의 입주 대상자는 고소득층 소비자로 설정됐으며, 입주 방식은 ‘열향연금’의 가입으로 한정됨
 - ‘열향연금’에 200만 위안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가입자는 실버타운의 입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 회원	₩300,000원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영문 연차보고서 추가 제공
특별 회원	₩150,000원		
개인 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해외 보험동향 07호 [2021년 가을호]

발 행 일 2021년 10월
발 행 인 안 철 경
발 행 처 보험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문 의 보험연구원 글로벌보험센터(02-3775-9076)
인 쇄 소 경성문화사

ISSN 2714-0482

정가 10,000원